

미래의 희망 로스쿨
LawSCHOOL 차오

2018. MAY + JUNE



05/06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경계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법에서 출발하는 것을 선호한다.

-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8
05 + 06



발행일 2018년 5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강현 원장
- 08 파워 인터뷰
법무법인 수호 이형찬 변호사
- 12 SPECIAL REPORT
- 22 행복 로스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유정민
- 24 통계로 보는 로스쿨
- 26 언론 속 로스쿨
- 34 로스쿨 핫이슈
- 36 로스쿨 오피니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원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원장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
- 44 특별기고
법무법인 P&K 임지웅 변호사
전라남도교육청 양세원 변호사
- 48 리트를 부탁해
- 52 로스쿨 특파원
- 60 로스쿨 생활백서
생생한 헌법 재판의 현장!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 64 건강멘토링
- 66 책 읽어주는 변호사
- 70 문화가 산책
- 72 협의회 소식 / BOOK
- 74 OUT CAMPUS / LAW QUIZ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반 세기 넘는 법학교육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강현 원장을 찾아 개원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뿐만 아니라 각종 지표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꾸준히 내는 비결에 대해 들었다. editor. 박소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강현 원장

“법률가에게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약 력

- 전공 상법 / 국제거래법
- 학 렳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 M.)
- 경 렳 변호사(한국, 미국 뉴욕주)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처장, 학생처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Q. 부임하신지 약 100일이 지났는데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주세요.

A.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원장으로 부임한지 석 달 가량 되었습니다. 제가 복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임 이후 좋은 소식이 연이어 있었습니다(웃음). 첫 번째는 작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진행한 법전원 2주기 인증평가에서 연세대학교 법전원이 높은 순위

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법무부가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했는데, 연세대학교 법전원이 누적 합격률(1회~7회)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발전을 지속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감이 있지만, 원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책무라고 생각하며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법전원이 나아가야 할 길은 세계적인 수준의 로스쿨로 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40여 분의 교수님과 행정팀이 단합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타 법전원과 차별화되는 연세대학교 법전원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의 특성을 따르고 있으며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이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법전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또한 특성화 과목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연세대학교 법전원은 세 가지의 특성화 프로그램(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을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전원만의 또 다른 강점으로는 ‘변호사시험 대비 강화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화프로그램은 외부 전문출제위원들이 출제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풀고 강평을 듣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비용부담이 크지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재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전원 전용기숙사 ‘법현학사’도 연세대학교 법전원만의 자랑거리입니다.

Q. 연세대학교 법전원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으며, 종교에 따른 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의 교훈 아래 우리 법전원은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법조인의 양성’을 서브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또한 ‘민주적 법치사회에 기여하는 윤리적 법조인’,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역량 있는 법조인’, ‘지식 기반 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Q. 일각에서는 법전원의 특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중 특성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법전원 원장님으로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는 기본적으로 특성화를 ‘전문화(specialized)되기 위해 씨앗을 뿌려주는 단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전문화된 방향의 가능성을 보고 자란 사람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위해 모든 시각을 차단하고 공부만 한 사람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법전원은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의료과학기술과 법이라는 과목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의료와 법, 과학이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 배우고, 이들에게는 향후 의료법에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예 특성화 자체를 닫아버리면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위해 공부하게 되고, 육법전서에 매몰돼 마치 찍어낸 벽돌처럼 획일적인 법조인이 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법전원이 특성화 교육을 버리지 않고 지속하는 것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Q. 지난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3,24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599명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응시자의 절반도 선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무부 자체가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으로 규정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법전원을 왜 도입했는지, 도입한 취지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전원의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의 양성’이며 과거 사법시험과 다른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기치 아래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선발고사처럼 합격선을 정해버리면 도입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법전원에서 엄격한 학사 관리를 하고, 그 전제로 ‘자격시험화’를 해주는

것이 법전원의 도입 취지와 부합합니다. 물론 법전원으로 인해 변호사가 많아져 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도입 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해야 하며, 지금처럼 몇 명이 시험을 치르든 1,500명 내외만 뽑겠다는 것은 법무부 스스로 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각 법전원별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여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A. 합격률 공개로 인해 법전원별 서열이 가시화된 현 상황에서는 모든 법전원들이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준비만 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사법시험 하에서 법전원 도입론자들이 주장했던 ‘자격 없는 학원의 번성’, ‘정상교육의 붕괴와 신립동 사설학원의 집중’ 등의 문제와 같은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법전원에서의 교육보다는 ‘수험적합성 있는 강의’를 찾아서 학원가로 움직일 것이고, 이로 인해 사설 학원들이 범람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정보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순위를 궁금해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Q. 우리나라보다 로스쿨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도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A.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 주(州)마다 변호사시험이 다르게 치러집니다. 모든 주가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도 있지만, 그 외에는 하루 또는 이틀을 더 소요해서 주마다 별도로 시험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치릅니다. 또 A주(州)의 변호사가 B주(州)의 사건을 계속해서 맡을 수 없는 등 우리나라와는 환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미국의 한 개 주보다도 작은 시장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전원별 합격률을 낱낱이 공개하면 일부 법전원들은 지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자는 의도로 도입된 법전원이었는데, 지금은 양쪽 모두 어렵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Q.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제무대를 겨냥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전원의 현황은 어떤가요?

A. 연세대학교 법전원은 외국의 우수 대학들과 복수학위 프로그램 및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워싱턴주립대학교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 14개국 35개 대학교와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수 대학들과 협정을 체결했지만 변호사시험 준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화의 발판을 마련해줬지만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뜻 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70명의 학생이 해외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법전원에서는 해외대학 교환학생을 신청하면 장학금을 지급해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약 10명의 변호사가 연세대학교 법전원을 졸업해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 개인의 영리영달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쓰이는 것을 경계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같이 해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Q. 법조계의 부정부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법조계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법조계의 고착된 병폐는 ‘출신대학’과 ‘사법연수원의 기수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출신대학과 연수원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개인적 영달이나 돈을 벌기 위해 행동하였다면, 법조인 스스로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Q. 법전원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배출이 많아졌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법전원 도입 전부터 매년 2,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을 정원으로 정하여 배출하게 된 까닭은 법조 유사직역을 정리해서 법조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기업이나 공직까지 문호를 확장한다면 법률가들이 갈 곳이 많아져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예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사직역은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공직이나 공기업의 문호를 넓히는 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들도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도 계속되어 온 불황의 여파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불황으로 법률시장으로 배출되는 인원을 받아줄 여력이 사회에 없는 것이지요. 경제가 부흥되고 이와 같이 맞물려가게 된다면, 1년에 2,000명 정도의 법률가는 사회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Q.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전원 3년의 교육과정은 짧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A. 법학은 실천학문이기 때문에 강의실 안에서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이 아닌 4년, 5년을 교육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조인은 실무에 나가서 살아있는 사건과 부딪칠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로펌에 가면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으며, 기업에 입사한 변호사도 선배 변호사들에게 지도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3년간 로스쿨에서 공부했다고 완벽한 변호사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충실히 익혀 사회에 나가 사건과 부딪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원장님께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시고, 한국과 미국(뉴욕주)의 변호사, 법전원 교수를 차례로 역임하는 등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인 법전원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저는 40년 가까이 법학을 공부했지만, 법을 공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법률가는 실력이 있어야 하며, 실력 있는 법률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2,0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적인 학문이 바로 신학, 의학, 법학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의사는 의사라고 칭할 수 없고,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신학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법률가 역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 개인의 영리영달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쓰이는 것을 경계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같이 해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실력도 갖추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도 따뜻한 법률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법전원을 졸업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웃음). **창**

이형찬 변호사를 소개하는 말 앞에는 어김없이 '수의사 출신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수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이 변호사를 만나는 의뢰인들에게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를 만나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해 들어봤다. editor 박소희

법무법인 수호 이형찬 변호사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 과정의 법제도 정비와 정책 마련에 일조하고 싶어”



변호사는 법제의 정비, 제도의 개선, 이에 대한 정치한 이론의 제시 등 사회와 깊이 있게 소통하는 내가 찾던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Q. 수의사도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인데,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A. 학창시절 국내외를 떠돌며 했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관심으로 수의학과에 입학했다. 당시만 해도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실험실에 들어가 기초과학자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목표가 확실했다. 그러나 수의학과 재학 중 줄기세포 연구는 연구윤리 등 문제로 한순간에 몰락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일었고 매일 언론에 톱기사로 줄기세포 연구의 진실성 등이 다루어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초과학자가 되고자 했던 나의 목표가 사라졌던 시기였다.

이때부터 단순한 이과생이었던 내가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과학이 발전하고,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학자를 꿈꾸던 내가 사회와 소통하고 관련 분야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그런데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변호사는 법제의 정비, 제도의 개선, 이에 대한 정치한 이론의 제시 등 사회와 깊이 있게 소통하는 내가 찾던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Q. 수의사로서의 삶과 변호사로서의 삶을 비교한다면?

A. 수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방역, 공중보건, 식품안전, 동물의 치료 등을 담당하며, 각 영역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 업무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다.

변호사는 위 각 분야에 대한 법률체계 등에 고민하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나는 정부 자문과정 및 각 부처의 위원회 참석 과정에서 행정부 공무원을 만나고,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거나 토론회에도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활동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법적 쟁점, 나아갈 길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수의사의 전문성이 변호사 활동에 어떤 도움을 주나?

A.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소송 및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노동법, 지적권 등 법률분야별 전문성을 주로 강조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법률분야별 전문성 보다는 산업분야별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농축산업, 식품, 환경 등의 분야를 이해하고 해당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변호사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송은 법리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송과정에서의 입증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입증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 등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쟁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30분 정도 통화해 보면 대부분의 쟁점이 현출되기 마련이다.

Q. 현재 법무법인 수호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A.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물과 관련된 사건만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웃음).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건을 수입하고, 재판에 참석하여 변론하고, 각종 법적 자문에도 응한다. 다만 법무법인에서 농림축산식품, 환경, 의약 분야의 사건이 있다면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해 함께 회의를 하며 고민하고 진행하게 된다. 사건의 진행은 다른 변호사가 하더라도 나는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한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A. 한 식품회사에서 방송사를 상대로 진행하였던 방송금지 가치분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방송사는 내가 자문을 맡고 있던 식품회사의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을 방영할 것이라고 회사에 통보하였다. 직접 기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국가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제품의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회사는 악의적인 소문을 극복하고 다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차나에 커다란 악재에 맞닥뜨린 것이었다.

회사는 방송이 나가게 되면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간절함에 방송금지 가치분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나는 즉각 대응팀을 꾸려 변론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로서 축산물 관련 지식이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소장 작성과정 및 변론과정에서 해당 식품이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공중보건학적, 식품위생학적 지식을 충동원해 설명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식품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방송이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다루지 않았고, 사실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렵다고 생각하며 시작한 소송이었으나, 소송을 통해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다.

Q. 국내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서울대학교에서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SNU AHP)을 마쳤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에도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바쁠 텐데, 시간을 쪼개어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가 있다.

A. 서울대학교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은 공중보건·동물·식품 등 분야의 CEO, 전문가들이 모여 경영전략을 논의하고, 지식습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는 1기를 수료하였고, 현재는 해당 과정에서 ‘농축산업 관련 법규의 이해과 실제 법률 분쟁사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에서는 농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 농경제학은 농업·농촌·농민 문제뿐 아니라 자원·환경 문제,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과학적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농축수산업, 식품, 환경 분야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 과정에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도 가지고 있다.

의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의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현재는 업무가 과중하여 휴학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다.

Q. 꿈은 무엇인가.

A. 개인적으로 먼 미래에 대한 장기 목표보다는 3년 또는 5년 정도의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편이다. 우선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인 농축수산업, 식품, 환경 등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서 성장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이후에는 이러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 과정에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를 위해 국회의 농업정책포럼 수의방역분과의 간사를 맡고 있다.

Q. 수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의 제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A. 우리나라의 법도 선진국의 식탁 패러다임 전환 경향에 발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는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는 ‘원헬스 패러다임’이 입법에도 활발히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식품 및 환경 관련 법령에 원헬스의 개념을 넣어 미래 가치를 담은 법이 활발하게 입법되었으면 좋겠다. **창**



이형찬 변호사 · 수의사 약력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사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在)
- 서울대학교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SNU AHP)
- 前)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現)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등 자문변호사
- 現) 건국대학교 농식품안전인증센터 운영위원
- 現) 서울시수의사회 법제이사 · 자문변호사
- 現)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LMO수입승인 자문위원
- 現) 의료문제 변호사모임 재무이사

지난 5월 10일(목),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팰트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10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들로 구성되었다. editor. 박소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현장

16:30~17:0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행사장은 행사의 시작 전부터 수많은 내빈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으며, 언론사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참석자들의 네임카드와 접수대의 모습



방명록을 작성하는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5대 이사장



축하화환으로 가득 찬 행사장 입구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맞이하는 이형규 이사장

10주년 기념식에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하여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동용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시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의 시작에 앞서 티타임을 가진 내빈들의 모습



행사의 진행을 맡은 이정민 아나운서



기념식 시작 전부터 자리를 가득 채운 참석자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08년 4월 11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받은 25개교의 법과대학장들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호문혁 학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2008년 5월 27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정하였다.

17:00~17:30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으며, 뒤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축하하기 위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민의례 모습



참석자들에게 인사 중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지난 10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법전문협의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정착시키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가 형식적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문재인 정부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지향하는데, 로스쿨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왔고 의미 있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입학전형의 공정성 강화와 더불어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의 질적 개선이 중요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에 대한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들이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활동 영역에 비해 법원·검찰 외에도 기업·지방자치단체 등 현저히 넓은 범위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단계를 넘어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각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법조인력 양성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나간다면 지금 앞에 놓은 과제들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30~18:00

내빈들의 축사가 끝난 후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회 10년의 역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뒤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난 10년 나아갈 100년'이라는 주제를 담은 기념 영상이 상영되었다. 영상을 상영을 마친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4대 이사장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현윤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0년의 발자취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경과보고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 출제 및 시행 주관기관으로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시행을 통한 법전문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졸업시험을 대체하여 양질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과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하여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통해 제도 안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영상 상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제작한 창립 10주년 기념 영상 <지난 10년, 나아갈 100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초기 논의 단계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초대 이사장 인터뷰 등이 담겨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립 사진과 설립 목적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협의회 업무, 이사장과 연구사업단장의 인터뷰,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 인터뷰 등도 함께 담겨있다.



기조강연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0년의 발자취와 발전과제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4대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제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법전문 학생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노력,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법전문생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그 예입니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취지 실현’을 위해 변호사시험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문변호사 양성 등 법조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18:00~20:00

뒤이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로자에 대한 공로패와 표창장 시상도 진행됐다. 호문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초대 이사장과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정회광 팀장은 창립시부터 재직하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다.



공로상을 수상한 호문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초대 이사장



공로상을 수상한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표창장을 수상한 맹주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팀장



표창장을 수상한 정회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팀장



축하 공연

가진(한양대학교 국악과 졸업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국악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그룹 '가진'의 축하 공연이 열렸다. 가진은 한국의 대표적 관악기인 태평소와 장구 신디, 해금 피아노, 북을 이용해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공연하였다. 특히 판소리 5바탕 중 하나인 <춘향가> 중 '사랑가'를 노래해 내빈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케이크 커팅식

뒤이어 지나온 10년의 시간을 축하하고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올바른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염원하는 의미의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다. 케이크 커팅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대 이사장과 내빈들이 함께 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 단체사진



기념 영상을 보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전·현임 원장과 내빈들의 기념사진



만찬 시작 전 건배사를 하는 호문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초대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4월 5일(목)부터 5월 3일(목)까지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올해로 3 회째를 맞이했으며, 매년 1,000명이 넘는 수험생들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올해는 전국의 10개 대학교에서 1,200명 가량의 수험생이 참석했다. editor 박소희

법학적성시험의 A부터 Z까지 LEET 전국순회 설명회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다양한 학부, 전공을 가진 사람들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적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필수요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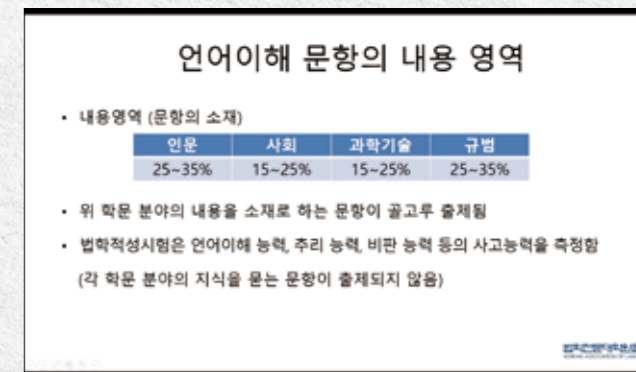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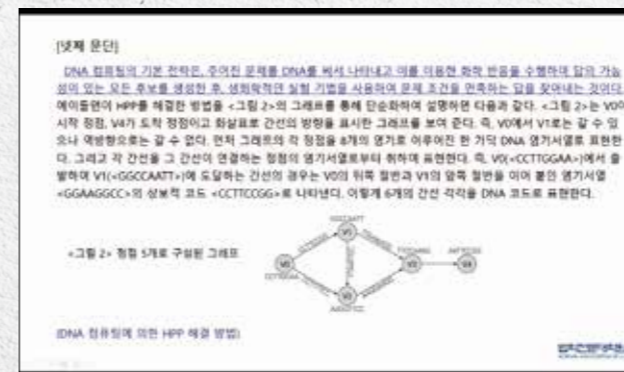
지역	일정	장소
서울	4월 5일(목)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B2층)
충남	4월 10일(화)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문원강당(1층)
경북	4월 12일(목)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4호)
서울	4월 17일(화)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2층)
인천	4월 19일(목)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강당(B1층)
전남	4월 24일(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111호
부산	4월 26일(목)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대강당(1층)
전북	4월 30일(월)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1층)
서울	5월 2일(수)	연세대학교 광복관 105호(B1층)
제주	5월 3일(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B1층)

설명회 진행 순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설명회는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의 첫 번째 순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 이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비롯해 교육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실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등록금과 장학금 제도, 특별전형제도,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등 지원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특히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률이 타 전문대학원(의학 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이며,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에 대해 상세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변호사시험과 졸업 후의 진로 등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진 두 번째 순서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시험의 개요와 일정, 응시료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었고, 문제지와 답안지의 크기 같은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 법학적성시험의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달라져, 이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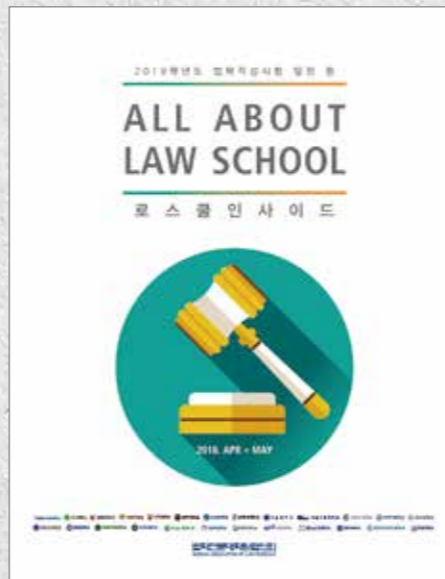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사업단의 관계자가 법학적성시험의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법학적성시험의 목적과 성격, 각 영역별 특징과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법학적성시험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비롯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비법 등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루어졌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난 후, 학생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 설명회에서 배포된 책자(로스쿨 인사이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 현장 이모저모



현장 Mini 인터뷰



학생 인터뷰

Q. 설명회에는 어떻게 참석하게 됐나요?

A. 로스쿨에 입학한 지인이 법학적성시험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설명회 참석을 권유했어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마침 저희 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길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Q. 설명회가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궁금해요.

A. 올해부터 법학적성시험의 영역별 문항수랑 시간이 변경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 오히려 더 잘 준비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자신감 같은 게 생기네요(웃음). 또 법학적성시험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셔서, 꼭 진학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장학 혜택도 많아서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돼서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학부모 인터뷰

Q. 설명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참석하셨나요?

A. 아들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알게 됐어요. 아들이 함께 와서 들으면 좋을 텐데, 시험 준비한다고 너무 바빠서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Q. 설명회를 끝까지 다 들으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A. 오늘 설명회장을 방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치열하게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견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이하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절반도 합격하지 못하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네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 일정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7월 15일(일)에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5월 29일(화)부터 6월 7일(목)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마지막 날인 6월 7일(목)은 18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기간과 시간을 확인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자	주요내용	비고
2018.2.1.(목)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	
2018.5.29.(화) 09:00 ~6.7.(목) 18:00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 접수	LEET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18.6.28.(목)	수험표 교부	시험당일 지참
2018.7.15.(일)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2018.8.23.(목)	성적발표	LEET 홈페이지
2018.8.29.(수)~8.30.(목)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
2018.10.1.(월)~10.5.(금)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올해 스물여섯 살인 유정민 학생은 여섯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다. 이후 예술중·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불현 듯 로스쿨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학 공부가 재미있지만 첫 번째 중간고사 성적이 나와야만 적성에 맞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는 유정민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editor. 박소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유정민

사회에 보탬이 되고 더 좋게 변화시키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Q 한순간에 진로를 변경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A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6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으니까 20년 정도를 한 거잖아요(웃음). 주변에서 지금까지 음악을 해온 게 아깝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해온 노력과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도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 선택을 정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단지 새로운 학문을 더 공부하는 것뿐이고, 바이올린은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법학 공부를 굉장히 해보고 싶었고,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법학에 대한 관심은 어떤 계기로 생기게 됐나요?

A 학부 시절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교직 이수도 했었고, 다양한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했었어요. 어린 학생들에게 바이올린, 아카펠라 등을 가르쳐 주는 봉사활동이었는데, 단순히 봉사에 그치지 않고 더 깊어지 있는 활동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3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음악교육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어요. 당시 학생이기도 했고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 등 각종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저처럼 법적인 지식이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인 문제에 얽히게 될 때 곤란

함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런 차나에 교환학생을 통해 법학 수업을 접하게 됐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학부 시절에 만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주세요.

A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음악 수업이 등한시되고 있고, 반대로 사교육에서는 악기 교육에만 치우치게 되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음학(音學)'이 아닌 '음악(音樂)'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업은 음악과 철학, 미술, 문학 등 다양한 학문을 결합해서 학업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 3학년 때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2016년도에 법인을 설립했고, 2017년도에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로스쿨에 입학한 지 세 달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A 악기를 오래했기 때문에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앉아있는 건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서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웃음).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일단 공부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고 게다가 저는 지금 법이라는 학문에 겨우 발을 담근 것에 불과해 같길어 아주 많이 남았다는 생각에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악기는 꽤 오랜 시간을 했지만 너무 오래 전이라, 궤도에 오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은 로스쿨에서의 첫 번째 도전이라 더 크게 와 닿는 게 있어서 조금은 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라 후회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법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재미있어요! 힘든 와중에도 하나씩 알아가는 보람이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Q 졸업 후에는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으세요?

A 로스쿨 입학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기업과 스타트업 분야의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였어요. 그 분야로 진출해서 사회적 기업에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지만, 3년 동안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다른 분야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제가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 중 공공성을 추구하는 몇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부 때 사회적 기업을 시작한 것도 사회를 바꾸는 데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설령 로스쿨을 졸업해서 스타트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웃음). 창

유정민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노하우!

기출문제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문제도 풀어봐야

리트는 다른 시험처럼 기출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리트 기출문제만 풀어보는 것으로는 불안했다. 그래서 PSAT을 비롯해 각종 고시문제, 수능 문제까지 닦치는 대로 풀었다. 이렇게 여러 영역의 문제를 접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익숙함을 길러주고 사고력을 더 탄탄하게 잡아준다.

신체리듬과 멘탈 관리가 관건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아예 리트 당일처럼 생활했다. 일어나는 시간을 리트 당일과 동일하게 맞춘 후, 언어이해 영역을 풀고 잠깐의 휴식을 가진 뒤 다시 추리논증 영역을 풀었다.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 신체를 시험 당일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두고 멘탈관리에 들어갔다. 리트는 고시처럼 외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멘탈관리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넘어가라'는 선배들의 조언이 막상 시험 당일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 또한 언어영역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을 오래 붙잡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첫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멘탈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출제자가 어려운 문제를 앞에 넣었다고 생각하고(웃음), 과감히 넘기는 멘탈을 가져야 한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학생들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100번도 넘게 한 퇴고

자기소개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로스쿨 선배들은 물론이고 공대, 의대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첨삭을 부탁했다. 그들은 나오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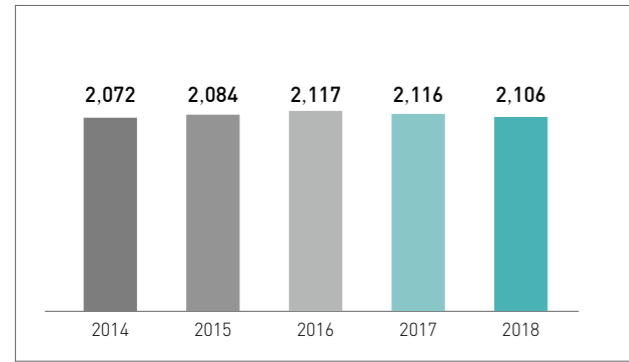
순발력과 반박에 대한 반박

로스쿨 입시 면접에서는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순발력이 중요하다. 또한 어떤 주제에 대해 나의 논리를 펼쳐나갈 때, 단순히 내 논리만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논리에 대한 반박과 다시 그 내용을 반박하는 것까지 덧붙여 답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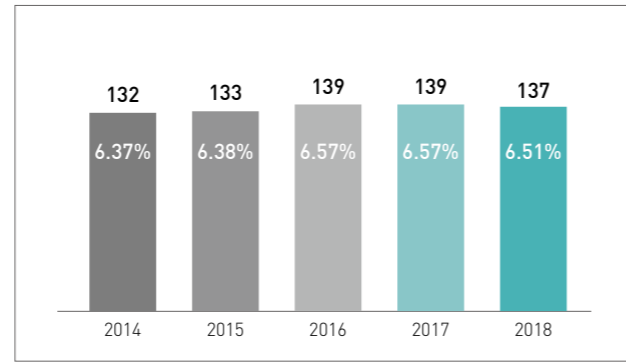
작년 8월 전국 9개 지구에서 실시된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적성시험(LEET)에는 총 10,206명이 응시했으며, 이후 면접과 논술시험 등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을 거친 2,106명의 학생이 신입생으로 선발됐다.

통계로 보는 2018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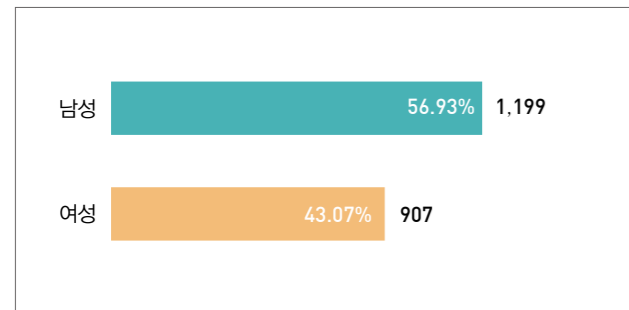
▶ 총 합격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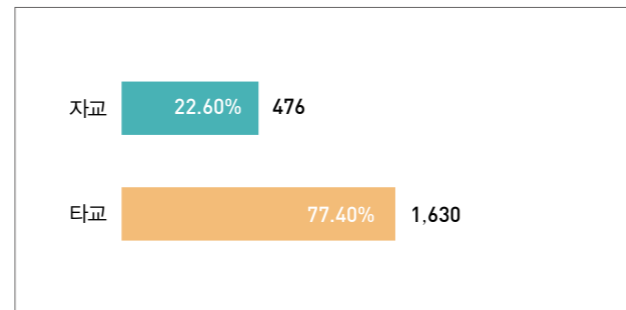
▶ 특별전형 입학생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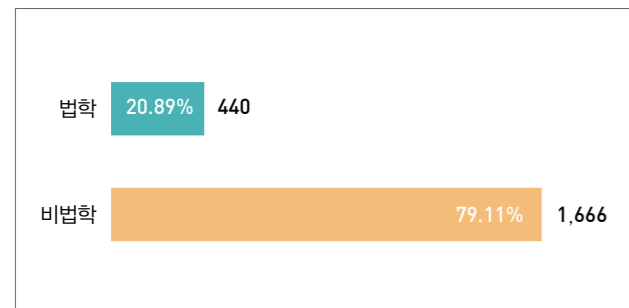
▶ 성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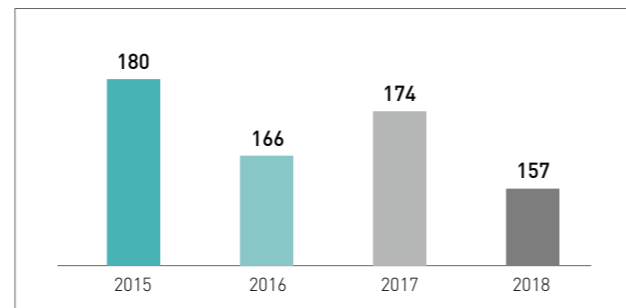
▶ 자교 / 타교 단위: 명



▶ 법학 / 비법학 단위: 명



▶ 지역균형인재 단위: 명



▶ 출신 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 계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계열	251	154	405	24	11	35	275	165	440	20.89
상경제열	316	168	484	19	7	26	335	175	510	24.22
사회계열	217	244	461	25	11	36	242	255	497	23.60
인문계열	136	169	305	12	9	21	148	178	326	15.48
공학계열	79	23	102	5	3	8	84	26	110	5.22
사범계열	28	46	74	2	2	4	30	48	78	3.70
자연계열	28	21	49	0	1	1	28	22	50	2.37
예체능계열	10	8	18	1	0	1	11	8	19	0.90
의학계열	9	5	14	0	0	0	9	5	14	0.66
약학계열	2	6	8	0	0	0	2	6	8	0.38
농학계열	3	2	5	0	0	0	3	2	5	0.24
신학계열	2	1	3	0	1	1	2	2	4	0.19
기 타	26	14	40	4	1	5	30	15	45	2.14
계	1,107	861	1,968	92	46	138	1,199	907	2,106	100

▶ 연령별 <나이산출 : 2017-출생년도+1 또는 2018-출생년도>

구분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5	16	21	1.00
23세 ~ 25세	251	468	719	34.14
26세 ~ 28세	519	259	778	36.94
29세 ~ 31세	223	87	310	14.72
32세 ~ 34세	88	43	131	6.22
35세 ~ 40세	89	29	118	5.60
41세 이상	24	5	29	1.38
계	1,199	907	2,106	100

“로스쿨 10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지난 10일,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로스쿨제도도 도입 10년차를 맞았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는 ‘사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3차례에 걸친 헌법소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 ‘변호사시험은 법조인 배출 시험으로 자격미달’이라는 비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이제 유일한 법조인 배출의 관문이 된 로스쿨과 변호사시

험 제도, 비판과 험뜯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로스쿨협의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정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들과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로스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로스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로스쿨제도도 도입 10년차입니다. 지난 10년간 로스쿨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왔다고 생각하는지.

로스쿨 도입 초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과 논

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은 사항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학사관리의 엄격성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가 또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는 우리가 정량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고 정량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이라든가 점수로 확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공개했고, 또 논술이라든가 면접시험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논술에서도 블라인드 채점을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됐습니다. 학사관리 엄격성 문제도 우리가 필수과목에 대한 학점취득에 있어서는 상대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했고, 또 선택과목에서도 대부분 약간 완화돼있지만 상대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상대평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졸업 이수 학점을 제대로 취득했느냐, 또 이수 학점에 평균 기준을 상회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졸업 여부도 결정하고 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여부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사관리의 엄격성도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는 변호사시험이 기본적으로 자격시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회 때는 아시다시피 87.15%였는데,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7회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49.35%로 1회와 7회 사이 6년간의 무려 37%, 37% 이상의 차이가 남으로서 시험 본 응시자들의 형평성, 합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자격시험으로서 과연 50% 미만 합격률을 보이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이 50% 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1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천명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한 다음에 또 3년간 공부를 하면서 법학수학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면 입학, 변호사시험 볼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충실히 하고 시험을 보는 데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격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합격 방식은 제고돼야 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시부활을 주장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로스쿨제도의 안정화는 산 넘어 산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법시험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서 과거에 신분상승의 기회로 활용되기도 했고, 또 그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공부해 온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합격은 안됐지만 공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고 사시 준비를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시제도가 계속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미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이라든가 변호사시험법이 만들어지면서 8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충분히 유예기간을 주고 그 뒤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간다,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라든가 사법시험과 관계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법적·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니 만큼 이것은 서로가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입니다. 변호사시험법에서도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법률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고 그 시험은 법학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시험이 현재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지 않고 일정 수를 선발하는 선발시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져서 실제로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과거 사법시험이나 마찬가지로 선발시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고시낭인이 발생했었는데 변시 낭인이 또 발생한다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험이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의 판례를 외워야 하는지 어느 범위에서 시험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는 기본적인 공부를 로스쿨에서 충실히 한 사람이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변시가 법조인 배출 시험으로 자격 미달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

다만 이제 우리가 사법시험 합격자와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등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은 대개는 법대를 졸업, 법대 4년을 졸업하고 나서도 1, 2년간 공부를 더 한 다음에 합격하기도 하고 또 그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도 연수원에 가서 실무연수를 2년간 체계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3년 동안에 그것도 대개는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기본 법 이론과 실무교육과 실습까지 마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간적

으로 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사법시험 준비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그만큼 능력을 쌓았으면 충분히 앞으로 법조인이 돼서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시는 70년, 로스쿨은 이제 겨우 도입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니다. 어떻게 보면 사시 출신 변호사는 다수, 변시 출신 변호사는 소수에 속하는데, 소수에 대한 견제나 차별을 이사장님께서 는 실감하시는지.

저는 물론 언론상에서나 또는 단체에서 변호사 단체, 대한변협, 또 법조인 협회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사법시험 출신들의 모임, 또 로스쿨 출신들의 모임이 구별해서 구분해서 있지만 저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누가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사법시험 출신이나, 로스쿨 출신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 가거나 어느 직업에 가거나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로스쿨 출신이나, 또는 사시출신이나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로스쿨 출신이 지금은 적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는 사시 변호사와 변시 변호사 사이 갈등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대한변협이나 한법협이나 다수간의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그동안 업무를 추진했던 것은 대부분은 다 송무 시장이었습니니다. 송무 시장의 과거에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약 8천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송무 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이제 약 2만명 정도, 그보다 변호사 숫

자는 더 많습니니다만 실제로 송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숫자는 한 2만명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1.5배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과거에 하던 행태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서 발생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지 송무 시장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 관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기업, 나아가서는 국제기구, 국제로펌, 이런 데도 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송무시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변호사수요가 있고 또 그쪽으로 나간다면 갈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학교 출신만 해도 20~30%가 지금 사내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정부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무원을 10만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공무원을 증원할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니다마는 과거에 무의촌이 있었는데 지금의사가 늘어나다보니까 대부분이 무의촌이 지금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무변촌은 시·구 내 법원의 지원이나 검찰청의 지청이 있는 곳은 변호사가 있습니니다마는 그런 지청이나 지원이 없는 곳은 변호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곳에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시군에 법률자문관으로 변호사를 채용한다면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향상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제가 상법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회사에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제도가 있는데 준법지원인 제도는 상장회사로서 기본적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률서비스 문제는 비단 기업 내부에서도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변호사하면 급여가 평

장히 높은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급여를 높게 주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채용해서 과거에 법무팀에 법대 나온 사람 채용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채용해서 활용한다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훨씬 더 변호사도 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직역확대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변호사들도 송무에만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진 아웃제로 '변시 낭인' 문제가 시험철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질문을 해주시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사실은 5진 아웃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니다만 변호사시험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그렇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충실히 이수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되는데,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정 정원을 선발하는 입학정원의 75%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응시생은 늘어나는데 합격률은 저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를 기본 교육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히 받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합격률을 지금처럼 그렇게 50% 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한 60%만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5진 아웃제 논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변시 낭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진 아웃제가 아니라 10진 아웃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격률을 낮춰버리면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격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5진 아웃제가 잔인하다는 말도 있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5진 아웃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 시험을 보느냐보다는 합격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합격률을 지금처럼 그렇게 50% 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한 60%만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5진 아웃제 논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번시 낭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따라서 지금 5진 아웃이 된 분들한테는 이제 어떤 특별한 기회를 드리든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앞으로 5진 아웃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합격률을 높이면 5진 아웃제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5진 아웃제에 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배출을 줄여야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시장에 많을수록 비용이나 선택적 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간극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은 송무 시장입니다. 송무를 주로 해왔어요. 그래서 송무 이외의 직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이런 유사직역의 유사 법조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미 유사 법조인이 지금 최근 10년간 4배

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변호사들이 송무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 직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변호사들의 능력이 유사직역 종사자보다 못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영역에서 활동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국민 법률서비스는 향상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던 사람들도 적절한 변호사 비용으로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배출되는 것이 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대한변협에서 흔히 일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비례와 일본의 인구비례를 보면 일본의 변호사수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많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만 본 얘기고요. 실제 일본의 송무 건수는 우리나라 인구대비로 보면 5분에 1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구만 기준으로 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팩트를 기준으로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제가 전에도 한번 다른 데 얘기했는데 오늘 또 홍콩 대학장 왔다 갔습니다만 홍콩의 경우는 인구가 750만인데 매년 650명씩 변호사가 배출 된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1천명 이상을 배출해야 된다, 라고 대학에 요구하고 있대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배출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확대하면 변호사는 얼마든지 많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홍콩의 경우는 국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호사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로스쿨제도가 비판 여론을 줄이고 발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로스쿨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회적으로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을 충실히 개선하고 그리고 특

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법 이론에 충실하고 실무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철저히 수업을 이수시키고 또 학생들이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실무교육도 철저히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별다른 교육의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교육을 충실히 시킨다,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충실히 해서 나아가서 중요한 법률문제, 심각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예비 법조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면 우선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송무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넓혀서 많은 직역이 있다. 변호사가 종사할 직역은 매우 넓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보면 좋은 자기의 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법률 이론 공부에도 충실하고 실무도 클라이언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해주는 그런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우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때는 좁게 송무만 보지 말고 넓은 직역을 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년간 로스쿨협의회장을 이끌며 느꼈던 소회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더불어 차기 협의회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차기 협의회장한테 얘기할만한 그런 입장은 아닌데

그동안 제가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로스쿨은 전국에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로스쿨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협의회가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로스쿨협의회의 구성 멤버를 보면 로스쿨이 25개지만 대규모 로스쿨과 소규모 로스쿨, 수도권 로스쿨과 비수도권·지방 로스쿨, 그 다음에 국공립 로스쿨과 사립 로스쿨,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수간 상충되는 그런 로스쿨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스쿨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공약수를 빼내서 현안이라든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로스쿨이 따라오고 협의회 이사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능하면 그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로스쿨이 기본적으로는 정착을 했습니다. 로스쿨이 이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이 됐죠. 다른 시험은 폐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로스쿨이 안정적인 정착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거리라든가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게 로스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격률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도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다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합격률에 있다. 합격률만 높아지면 오로지 학원화되는 시험공부에만 매몰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합격률이 높을 때는 실무 수습도 외국에까지 가서 했는데 지금은 외국에 가서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국내에서 열심히 시험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합격률이 시험공부에 매몰될 수 있게 밖에 못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자격시험화 함으로써 시험공부에 매몰되지 않고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공부, 원하는 전문 분야의 공부도 하면서 기본 공부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는 자격시험화를 위해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가지 지금 법무부에서 만든 로스쿨 개선 TF팀에서도 논의 중인데, 지금 현재 전문법률과목을 선택과목 시험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선택과목이 사회적 수요라든가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난이도와 학습량을 가지고서 선택과목을 지금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법 같은 것은 40%가 넘는 반면에 조세법이라든가 지적재산권법은 2% 남짓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수요와는 동떨어진 그런 시험인데요. 이것을 이수제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에 관한 기본적 능력을 함양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분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할 일이고 그것을 협의회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든지 선택과목의 이수제, 이런 것들을 다음 협의회 회장 이사장님이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협의회는 모든 로스쿨이 협력해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정신, 이것이 이사장님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출처: 법률방송뉴스 2018-05-11

언론 속 로스쿨

[사설] 로스쿨 '변시(辯試) 학원화' 막을 대책 마련해야

그동안 꼭꼭 숨겨져 왔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로스쿨 도입 10년 만에야 처음 공개됐다. 예상대로 후폭풍은 거세다. 법무부가 발표한 순위에 로스쿨들은 입장 따라 불만들이다. 입학생, 졸업생, 응시자, 누적 합격률 등 서로 유리한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달라고 주장한다. 하위권 지방 로스쿨들은 끄끙 앓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은 지방 로스쿨의 경우 '지역균형선발' 취지 때문에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20%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출신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지방 로스쿨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이젠 로스쿨간의 치열한 순위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 로스쿨들이 합격률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졸업시험 통과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수한 학생만 골라



졸업시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몇몇 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로스쿨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해서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것은 문제 삼을 순 없겠지만 단순히 분모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가 더욱 가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원처럼 시험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강의를 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로 인해 일부 로스쿨에선 출제위원 경험이 있는 타 대학 로스쿨 교수를 초빙해 변시 특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학원의 강사들을 불러다가 변호사시험 출제 과목 특강도 하고, 실제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동영상 강의까지 틀어주고 있다. 학교 측이나 학생들에게나 변호사시험 합격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다 보니 '올머 겨자 먹기'로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으면 학생들의 원성은 물론 로스쿨 인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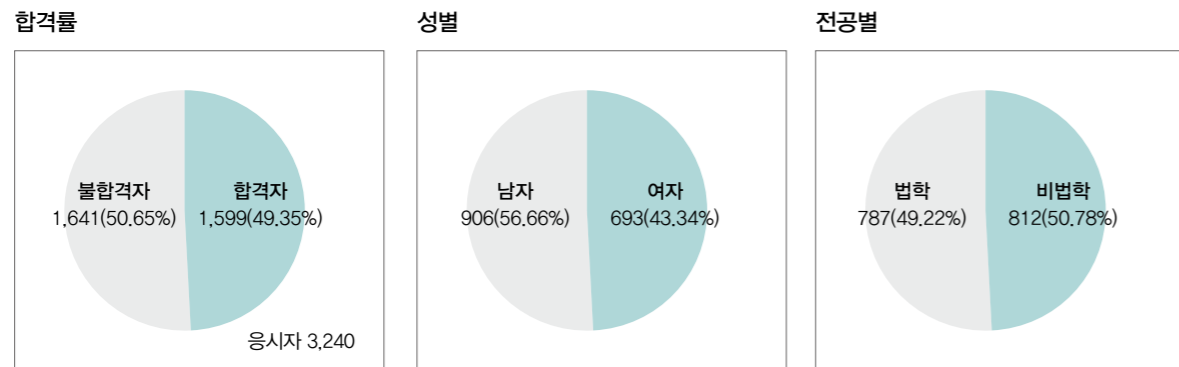
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변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변시 출제과목을 제외한 로스쿨 수업도 파행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학점을 퍼주는 이른바 '전략 과목'이 명맥을 유지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국제거래 실무, 기업인수합병(M&A) 실무처럼 변호사가 됐을 때 곧바로 도움이 될 실무 과목들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성화 교육도 상황은 같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출범 당시 IT법, 글로벌 기업법무 등 저마다 특성화 교육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교육이 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택과목 응시자도 빈익빈부익부다. 해당 선택과목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저 공부하기 쉽고 대세인 과목으로 쏠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양한 전공과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해 제대로 된 소양과 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뿌리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로스쿨들이 변시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를 막으면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는 묘수 마련이 시급하다. 그 방향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변시 낭인도 막고 지방 로스쿨들도 살리는 대안이 돼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시 합격률이 낮아질수록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로스쿨에도 사교육 광풍이 불게 된다. 더욱이 법학 비전공자가 절대 다수인 학생들은 사교육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로스쿨이 현 시스템으로 간다면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변시 고시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로스쿨 관계 기관은 하루속히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창**

기사출처: 법률저널 2018-05-04

제7회 변호사시험 1,599명 합격

4월 20일(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적용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총점 881.9점 이상인 1,599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599명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단위 : 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MOU 체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4월 18일(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HUG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각종 주택보증제도에 대해 부산대학교 법전문이 예비법조인들에게 풍부한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우수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HUG는 주택보증·금융제도와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적 연구를 장려하며, 부산대학교 법전문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보증 등 다양한 법률 이슈의 실무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연구성과의 공유, 법학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법학연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로스쿨 합격률 공개 지방대 로스쿨의 역할은?



김현수 원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부가 지난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또다시 로스쿨 제도 전반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다. 아니나 다를까 법무부는 로스쿨도 드디어 ‘서열화’ 시켜 버린 셈이 됐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의 설립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각 로스쿨이 합격률 제고만을 당면 목표로 해 사설학원화되고, 법학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해 종래의 법과대학 체제와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지적을 전면 무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의 취지나 공개범위를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1~7회 차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나아가 같은 기간을 통틀어 졸업한 학생 대비 누적 합격률까지 공개해버린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로스쿨 간의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비롯되는 입학과 졸업, 교육방식의 편법운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혹 합격률 공개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과 같은 변시 합격자 수를 대폭 줄이려는 데 있고, 그 수단이 특히 합격률 저조로 나타난 지방대 로스쿨의 통폐합 및 입학정원 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심각한 발상으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어떻든 대다수 지방대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수도권 로스쿨의 그것보다 절반 또는 내지 3분의 1에 그친 객관적 통계 자료는 지방대 입장에서 보면 충격 그 자체이고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지역 여론의 못매를 맞아도 변명할 바 없는 결과에 대해 지금의 지방대 로스쿨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로스쿨 설치로 만족하고 교수나 학교 당국은 방관하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만 진로 설계를 맡기는 등 안이하게 대응한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번 합격률 공개를 계기로 모자란 점을 채워놓고 평균 수준의 변시 합격률을 제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함과 아울러 다양한 법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생선발방법 개선, 교육과정 개편, 학사운영 강화 등 교육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와 마찬가지로 로스쿨도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록금이 수도권의 반값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도 반수 등 사유로 우수 학생들이 이탈하는 점, 더군다나 지방대 로스쿨은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 매년 정원 대비 입학자 중 10~20%를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학생으로 선발하는 역차별적 지역쿼터제까지 감당하고 있는 점 등 지방대 로스쿨로서는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짐을 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입 10년 차 되는 로스쿨 제도가 아직도 갈 길이 먼 미완성·미정착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어렵사리 로스쿨에 입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시험인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매몰되면서 이른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실종됐다. 로스쿨의 심각한 변시학원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사법시험의 폐해를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 지금은 불분명한 합격률을 따질 시점이 아니라 누구나 저렴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21세기형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로스쿨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점에서 법무부가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만사지탄이지만 적절해 보인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합격률 공개기준의 재설정 문제는 물론 변시의 자격시험화, 수험장소의 지역 확대 등 지역에 불리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지길 희망한다.

기사출처: 한국대학신문 2018-05-11

변시 합격자의 6개월 실무교육, 사법연수원이 맡아도 되는가?



정형근 원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실무수습의 현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 3. 20. 보도자료를 통하여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제정하였다면서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를 ‘변호사답게’ 대우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위 가이드를 보면, 실무수습 기간에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나마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실습지도 변호사의 칼럼, 논문, 저서를 대필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써야 할 신문 기고글을 대신 쓰게 하는 업무지시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습변호사에게 재판 운전을 전담하게 하거나, 지방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출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습제도가 악용되거나 신규 변호사들의 처우에 악영향을 준다면, 이 제도는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상당히 규모가 큰 로펌에서 실습 중인 변호사는 “사무실에 놓인 과자가 우리 월급이다.”라고 했다.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하니 사무실에 간식으로 준비해 둔 과자가 월급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매일 야근 근무를 하며 여러 달을 지내온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에게 차비라도 좀 달라고 했을 때, “너 같은 애들 길거리에 짝 깔렸어. 나한테 배운 것을 감사해야지 어디서 돈을 달라는 거냐!”고 매정하게 거절당했다고 한다. 과연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목격하여 왔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 1월 말에 개최한 실무수습제도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85조의 ‘변호사 연수교육’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법률사무에 종사해야 한다면서 법정변론은 경험해 볼 수 없게 하면서 법률사무소의 여분의 인력처럼 혹사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변시 합격한 후 취업만 하면 이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 서초동의 새내기 변호사

변호사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실무를 익히게 된다. 여러 해 전에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개업했던 때가 기억난다. 여러 사건을 상담하면서 교과서에서 볼 수 없었던 생소한 종류의 사건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업 후 처음으로 수임한 사건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사건이었다. 의뢰인은 전남 여수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분이었는데,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를 당한 사건이었다. 여수에서 가까운 전남 순천이나 광주에도 변호사들이 많은데 굳이 서초동까지 온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시골 변호사들이 뭐 압니까?” 라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여수에서 새벽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때 나는 변호사 개업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새내기였다. 단 한 번도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해 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시골변호사들 믿을 수 없다고 서울 찾아온 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기록은 본 적이 없었다. 연수원은 민사와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공소장 작성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니 행정소송은 모든 연수생이 강당에 모여 몇 시간 강의를 들은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나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개업 중인 변호사다운 권위를 풍기며 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갔다. “그렇지요! 시골 변호사들이 뭐 아냐요!”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드디어 수임약정서에 싸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 자리에서 뺏뺏한 100만원 수표 여러 장을 수입료로 받았다. 그 의뢰인은 더 많은 돈을 수입료로 준비해 온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를 부르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표정이었다. 그 사건을 수임한 직후에 과연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어찌 진행해 가야 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수입료를 먼저 수업료로 받은 다음,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그 사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청구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 당시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을 맡았기에 관할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하였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변론기일이 잡혀서 서울에서 광주고등법원에 내려갔다.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건을 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실에 들러 인사를 드렸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금방 사무실에 들어온 직후라서 슬리퍼를 신고 있던 부장님은 내가 들어가자 구두로 바꿔 신고신 후 양복 옷저고리를 입으시고 정중하게 나를 맞이해 주셨다. 나는 개업 후 수임한 첫 사건이라며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택시운전을 계속하여 생업을 유지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렸다. 그 부장님은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을 공감해 주시며 온화하시고 따뜻한 모습으로 나의 소정의 변론을 경청해 주셨다. 그러나 며칠 후에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그 후 진행된 본안사건에서 처분청의 대리인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다행히 서너 차례 변론기일 끝에 변론종결을 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가 1995. 2.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승소판결이 나왔다. 패소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그 상고도 기각되어 최종 승소하였다. 나의 첫 수임사건은 그렇게 잘 끝났다.

■ 변시 합격하고 다시 사법연수원으로?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변호사 휴업을 하고 대학으로 왔다. 로스쿨이 출범하고 로스쿨 1기들이 3학년

을 보내고 있을 때 6개월 실무수습제도가 생겼다. 이 제도 때문에 여러 전공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기존의 송무중심 법률사무소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시도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사회 각 영역으로 진출하여 전통적인 법률사무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풍토가 되면, 변시 합격자 인원을 놓고 줄이자 늘리자는 등의 갈등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의무연수를 집체강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로펌에 위탁하여 직접 법률사무 처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로스쿨 동기들이 취업해 있는 로펌에 실습 변호사를 보내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더니 이제는 ‘실무수습지도관’이라는 명칭의 변호사를 모집하여 실습 중인 변호사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2개월 동안 실습을 위탁하고 있다. 변협이 의무연수를 주관하는 것이 힘들어 위탁연수로 전환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런 의무연수를 주관하기가 버거워 사법연수원에서 이를 맡아 주기를 바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 전부를 연수원에 입소시켜 필수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에서 신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1년간 사법연수소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대외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까지 상실당하는 등으로 직역분쟁에서 밀리면서도 로스쿨을 공격하는 내부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법원원협의회 역시 대한변협의 의무연수에 한정하여 연수원이 이를 주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변시 마치고 취업해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수원의 실무교육을 잘 받으면 실력이 좋아져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한다. 만약 연수원이 실무교육을 맡게 된다면, 변협의 의무연수처럼 실무교육에 참여했다가 취업이 되더라도 그 중간에 그만 둘 수 없다. 연수를 시작했으면 마칠 때까지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설계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연수원이 이런 실무교육을 시행하려면 그 근거를 변호사법 등에 신설해야 한다. 그런 입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먼저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 대상자를 특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한변협이 주관하고 있는 의무연수에 참여한 자에 국한할 것인지, 변시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미 합격한 로클릭·검사임용예정자도 포함시킬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무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일본처럼 1년으로 할 것인지, 현재처럼 6개월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 물론 어떤 실무교육을 할 것인지도 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변시 합격자 전부를 필수적으로 연수원에 입소시켜 6개월 또는 1년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수원이 실무교육을 주관하게 되면, 로스쿨 1~2학년 때 로펌에 취업이 확정된 자도 실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변한 실무교육 때문에 로스쿨의 취업형태와 교육과정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된다. 연수원에서는 실효적인 실무교육을 위하여 이수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시험성적은 또 다른 스펙으로 작용할 것이라서 엄청난 시험 부담을 겪어야 한다.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 과정 중에 시험 보는 것과 비슷해진다. 그 결과 변시는 사법시험 성격으로 변하고,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더욱 약화되게 될 것이다. 어차피 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으니까 거기 가서 배워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에는 이미 연수원 소속의 판사, 검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다. 연수원의 교육시스템이 로스쿨에 접목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거 1,0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 중 대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데도 여전히 판사, 검사양성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연수원 교육에 대한 비판이 컸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기치로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은 사법연수원 역할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현행 실무수습제도가 폐지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지금보다 밀도 있는 실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실무교육이 미흡하다고 신선했던 제도를 폐지시키려면, 국민이 납득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때문에 공법기록형, 민사기록형, 형사기록형에 대비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과 같은 실무능력 향상과 직결된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

이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수원도 사시와 함께 그 소명을 다했기에 폐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변시 합격자들을 연수원으로 입소시켜 실무교육을 시키자는 변협의 주장은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하지는 것과 다름없다. 사시존치를 주장해 온 변협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로스쿨 쪽에서 이에 동조하는 것은 로스쿨의 자기 부정에 해당된다.

얼마 전에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은 인터뷰(법률신문 2018. 3. 12.자)를 통하여 “법원은 연수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사법연수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직무연수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국회가 적절한 정책 결정을 한다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사법연수원만큼 능력을 갖춘 곳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실무수습의 시행 주체의 변경에 관한 논의에 관하여 국회에서 입법해 주면 실무교육을 맡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한변협에 이어 법원까지도 찬성하는 입장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법무부만 찬성하면 되는 상황이다. 로스쿨 재학생 중에서 로클릭과 검사를 선발해 온 법원, 검찰이 변시 후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사법연수원에서 하기로 결정한다면, 연수원에서의 실무수습제도는 신설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재판연구원, 검사임용예정자는 실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하나만 두면 해결된다.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변시 합격자들을 사법연수원으로 입소하게 하여 실무교육을 받게 하면, 로스쿨은 사실상 4년제로 변하게 되고, 사시존치의 불씨를 되살려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실무수습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변협까지도 폐지해야 될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이 이 제도의 시행주체가 되는 것은 올바른 개선책이 아니라고 본다.

로스쿨을 바로 보자



류권홍 소장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얼마 전, 전국 로스쿨의 합격률이 전격적으로 공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여 공개하게 된 것이다. 합격률 공개의 여파로 인해,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해당 로스쿨의 인가를 취소하자거나, 로스쿨 합격자 수를 줄이고 사법시험을 다시 되살리자는 주장까지 무수한 논란들이 전개되고 있다.

서열주의, 학벌주의, 지방과 중앙의 차별이 유독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합격률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제 10년 된 로스쿨들 특히 지방 로스쿨들에게는 시련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중에는 지방에 소재하면서도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 있다.

하지만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지방대학 로스쿨들의 현실과 합격률이 높은 대학들이 왜 높았는지에 대한 이면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그런 다음 로스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한다.

변호사 시험 자체는 상당히 공정하다. 잠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니고, 시험 수준도 아주 높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도로 그리 쉬운 시험이 아니다. 쉽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3년 공부하고 합격한다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민사, 형사, 공법 실무는 기존 사법시험 1, 2차에 사법연수원 1년차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법시험으로 인한 특권계층화, 법조비리의 온상인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춘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보된 변호사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사법시험의 순혈주의와 끈끈한 네트워크가 깨져야 법조비리가 사라지고 사법의 정의가 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로스쿨들이 합격률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대학이든 현재까지 전체 졸업생의 60% 이상은 합격해오고 있다. 물론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합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사법시험 시대에는 상상이 불가능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사법시험 시대에는 서울대, 연고대 합격률이 전체의 50%를 차지했으며, 여기에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의 합격률을 포함하면 80%를 넘게 된다. 잘해야 20%가 지방대 출신들의 몫이 되었다.

변호사 시험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있다. 여전히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들이 지방 로스쿨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 로스쿨들은 지역인재 육성 정책으로 입학정원의 20%를 지역대학 출신으로 의무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지역의 인재들을 차별 없이 수용하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으로 성공한 측면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합격률과 관련해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지방 로스쿨들이 서울 소재 로스쿨들과 시작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로스쿨은 지방인재 의무할당비율이 없다.

이미 지방이라는 지역적 불리함이 있는데, 지역인재 의무할당으로 인해 불리함이 강화된 것이다. 같은 시작점에 놓고 보려면, 서울 소재 대학들에게도 수도권 밖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의무할당비율이 20% 이상 부과되어야 한다.

합격률이라는 무서운 사회적 평가기준이 존재하다보니 이제는 로스쿨들이 성적이 애매한 학생들의 졸업기회를 더욱 좁힐 것이다. 이미 많은 로스쿨들이 졸업생 수를 통제하면서 합격률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런 수단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 합격률이 높았던 대학은 의도적으로 사법시험 1차 합격자를 로스쿨에 합격시켜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였다. 학교 입장에서는 훌륭한 정책적 수단이었지만 이 또한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와는 맞지 않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려는 대한변협의 태도 또한 옹졸하다. 일반 사업자단체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후진 양성에 대한 장기적 고려, 후배들인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지원 등은 모른 채하면서 변호사 수를 통제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

물론, 도입된 로스쿨을 잘 살리고,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로스쿨의 커리큘럼 등을 포함해 손봐야 할 곳이 있다. 지금 데로 가서는 법학이론도 죽고 실무능력도 양성할 수 없는 수험용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들 또한 변호사의 다양성, 전문성을 확보라는 근본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고 노력해야 한다. **창**

기사출처: 중부일보 2018-05-14



루틴(Routine)의 필요성

법무법인 P&K
임지웅 변호사

영어 단어 '루틴(Routine)'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입니다. '판에 박힌, 지루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루틴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말이죠. 스포츠에서 루틴은 '특정 생각과 행동을 일상화, 자동화함으로써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소를 없애고 집중력을 높이는 운동선수들의 습관'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빙상의 여신 김연아 선수의 경우 경기 시작 전 '반시계 방향으로 빙판 활주 한 번 하고 뒤로 돌아 S자 그리며 요리 조리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 신궁 기보배 선수는 '① 오른쪽 깊이 ② 10점 방향 ③ 강하게(양팔) ④ 해봤으니 편안하게'라고 쓰인 루틴 카드를 시위를 당기기 전 뚫어지게 쳐다봤고, 백발백중 진중오 선수는 '탄 장전 후 손을 주머니에 넣고 구시렁 구시렁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루틴하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박한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장갑 벨크로 떼었다 붙이기-점프하며 발 두 번 털기-고개를 숙이고 쿵쿵거리며 헬멧 냄새 맡기-헬멧으로 머리 2번 쓸어올린 뒤 헬멧 쓰기-배트로 홈플레이트 뒤쪽 두 차례 톡톡 치기-배트로 홈플레이트 앞쪽에 선 곳기' 등 복잡하고 긴 루틴으로 완성(?) 이 자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선수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기량을 인정받은 선수들이고, 그에 걸맞는 결과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에 박히고 지루한 준비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스포츠에서의 루틴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불안요소를 없애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 겁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고 수많은 연습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또는 그보다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과 경연의 자리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감. 나아가 독보적 위치에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나보다 못한 선수에게 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궁극적으로는 내 스스로를 컨트롤 하지 못해 실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그리고 이런 불안감들로 인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 바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이 루틴일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나 수만 번의 연습 과정에서 익숙해진 일련의 행위, 절차 등을 반복함으로써 일상과 연습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자신감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역시 이런 루틴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되어 법정에서 섰던 일. 상담을 하고 의뢰인과 고민을 했던 일. 손을 모으고 불안에 떨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두고 최후변론을 했던 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떻게든 논리의 허점을 찾으려 파고들었던 일. 검사의 냉기어린 눈빛을 피고인과 함께 상대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던 일.

처음으로 맡게 되었던 변호사의 업무는 결코 녹록치 않았고 불안과 긴장,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와는 또 다른 실무 앞에서 어안이 병병할 정도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루틴'에는 딱히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적인 선수들도 다 제각각의 '루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건이 종료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을 테고, 상담을 끝낼 때마다 의뢰인에 따른 대응방법 등을 정리할 수도 있을 테고, 법정에 나가는 일이 떨어진다면 법정에 들어서기 전 각자의 주문을 윌 수도 있을 겁니다.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더해지며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했지만 여전히 사건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 일은 참 어려운 일구나'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비슷한 사건은 있을지언정 결코 동일한 사안은 있을 수 없는데다가, 의뢰인의 긴장과 스트레스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다 보니 불안과 긴장을 온전히 털어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업에서 접하던 사건은 그것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글로만 마주하고 끝낼 수 있었지만, 의뢰인, 상대방, 수사관, 검사, 판사 등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수 만가지의 경우의 수 앞에 놓이게 되니 이를 응대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연락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사건들을 대하다 보면 정해진 범위,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차분히 문제를 풀 때와는 다르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주간에는 각종 재판, 상담, 출장 등으로 외부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차분히 앉아서 서면을 작성한다든가 기록을 살펴본다든가 전략을 고민한다든가 등의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털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업무의 '루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루틴'에는 딱히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적인 선수들도 다 제각각의 '루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건이 종료되면 그 경험을 바탕

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을 테고, 상담을 끝낼 때마다 의뢰인에 따른 대응방법 등을 정리할 수도 있을 테고, 법정에 나가는 일이 떨어진다면 법정에 들어서기 전 각자의 주문을 윌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최고의 경지에 이른 선수들이 굳이 '루틴'을 유지했던 것은 불안을 없애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 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호흡과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맞이하실 수많은 시험과 가장 부담스러운 변호사 시험.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 맞이하게 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루틴'을 하나쯤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제 '루틴'이 궁금하시다구요?
저는 출근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 연필부터 깎습니다. '사각사각' 소리와 함께 연필도 잡념도 함께 깎여 나가더라구요.

임지웅 변호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3회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법무법인 P&K 구성원 변호사



교육청 변호사 이야기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전라남도교육청
양세원 변호사

I. 들어가며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에서 송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할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반 친구였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8명 중 한 명의 학생이 다른 두 명의 학생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시비를 가리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확대된 사안이었습니

다.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첫째로,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과는 다르게 학교폭력사건에 관련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 및 목격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진술서 등을 받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 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이라 한다.)를 개최하여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여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등)를,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조치(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를 각 내린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 간의 사과 및 선생님의 지도로 마무리되던 예전과 달리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작은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육청에 근무하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정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에는 '***교육청, 변호사 ***'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교육관련 시민단체 변호사로 일하다가 기회가 닿

아 전라남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학교폭력 분야는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II.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분야의 특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건디지 못하고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단순한 다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놀이터, 공원, 학원 등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생이면 충분하고 가해자는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학생에게 한 아동학대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핵심내용은 ①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

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② 학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하여 조사를 하고 ③ 이후 학부모위원, 외부위원 등이 포함된 자치위원회를 통하여 반드시 심의를 한 후 ④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받은 선도조치 중 전학 또는 퇴학 조치에 대하여는 교육청에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학 또는 퇴학을 포함한 모든 선도조치는 학교장의 '처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가능합니다. (단, 사립학교의 경우는 행정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피해학생은 자신이 받은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이 받은 선도조치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 시·도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복과정에 송무변호사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II.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역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을 접수·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 후, 조치를 통보하고, 조치의 이행, 이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일련의 절차를 모두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등 관련된 법에서 정해진 절차들도 모두 지켜야하며 만약 법에서 정해진 절차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은폐·축소로 의심 받게 되거나, 불복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 미준수는 단지 행정처분의 하자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건 당사자인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할 것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매뉴얼 제작, 강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불복 신청이 가능한데, 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운영에 참여하여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내용상의 하자는 없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하여 가해학생이 부당하게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심의합니다.

IV. 마무리

현재의 학교폭력 관련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는 현 제도 안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와 학생들을 법률적으로 조력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두가지 목적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법절차의 준수관점 뿐만 아니라 교육적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형식적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가해학생 측에게 최소한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며, 조치의 내용상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에도 가해학생의 행위의 심각성만을 놓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와 보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창**

양세원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전)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속변호사
(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전라남도교육청 변호사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언어이해 영역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의 성염색체에는 X와 Y염색체가 있다. 여성의 난자는 X염색체만을 갖지만, 남성의 정자는 X나 Y염색체 중 하나를 갖는다. 인간의 성은 여성의 난자에 X염색체의 정자가 수정되는지, 아니면 Y염색체의 정자가 수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전자의 경우는 XX염색체의 여성으로, 후자의 경우는 XY염색체의 남성으로 발달할 수 있게 된다.

인간과 같이 두 개의 성을 갖는 동물의 경우, 하나의 성이 성 결정의 기본 모델이 된다. 동물은 종류에 따라 기본 모델이 되는 성이 다르다. 조류의 경우 대개 수컷이 기본 모델이지만,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경우 암컷이 기본 모델이다. ㉠ 기본 모델이 아닌 성은 성염색체 유전자의 지령에 의해 조절되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개체 발생 과정 중에 기본 모델로부터 파생된다. 따라서 남성의 형성에는 여성 형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외에도 Y 염색체에 의해 조절되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Y 염색체의 지령에 의해 생성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 없다면 태아는 여성이 된다.

정자가 난자와 수정된 초기에는 성 결정 과정이 억제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약 6주가 지나면, 고환 또는 난소가 될 단일성선(單一性腺) 한 쌍, 남성 생식 기관인 부고환·정관·정낭으로 발달할 볼프관, 여성 생식 기관인 난관과 자궁으로 발달할 뮐러관이 모두 생겨난다. 볼프관과 뮐러관은 각기 남성과 여성 생식 기관 일부의 발생에만 관련이 있으며, 두 성을 구분하는 외형적인 기관들은 남성과 여성 태아의 특정 공통 조직으로부터 발달한다. 이러한 공통 조직이 남성의 음경과 음낭이 될지, 아니면 여성의 음핵과 음순이 될지는 태아의 발생 과정에서 추가적인 남성 호르몬 신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임신 7주쯤에 Y염색체에 있는 성 결정 유전자가 단일성선에 남성의 고환 생성을 명령하는 신호를 보내면서 남성 발달 과정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 단일성선이 고환으로 발달하고 나면, 이후의 남성 발달 과정은 새로 형성된 고환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적절한 시기에 맞춰 고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신호가 없다면 태아는 남성의 몸을 발달시키지 못하며, 심지어 정자를 여성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음경조차 만들어내지 못한다.

고환이 형성되고 나면 고환은 먼저 항뮐러관형성인자를 분비하여 뮐러관을 없애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에 반응하여 뮐러관이 제거될 수 있는 때는 발생 중 매우 짧은 시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신호의 전달 시점은 매우 정교하게 조절된다. 그 다음에 고환은 남성 생식기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볼프관에 또 다른 신호를 보낸다. 주로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볼프관은 부고환·정관·정낭으로 발달한다. 이들은 모두 고환에서 음경으로 정자를 내보내는 데 관여하는 기관이다. 만약 적절한 시기에 고환으로부터 이와 같은 호르몬 신호가 볼프관에 전달되지 않으면 볼프관은 임신 후 14주 이내에 저절로 사라진다. 이외에도 테스토스테론이 효소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되어 생긴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 요도, 음경, 음낭 등과 같은 남성의 생식

기관을 형성하도록 지시한다. 형성된 음낭은 임신 후기에 고환이 복강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를 감싼다.

여성 태아에서 단일성선을 난소로 만드는 변화는 남성 태아보다 늦은 임신 3~4개월쯤에 시작한다. 이 시기에 남성의 생식 기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볼프관은 호르몬 신호 없이도 퇴화되어 사라진다. 여성 신체의 발달은 남성에서처럼 호르몬 신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지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 난소의 적절한 발달과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20.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람'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남성 호르몬 불감성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항뮐러관형성인자와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결합하는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남성 호르몬에 반응하지 못하여 음경과 음낭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부신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젠의 영향을 받아 음핵과 음순이 만들어져 외부 성징은 여성으로 나타난다.

- ① 몸의 내부에 고환을 가지고 있다.
- ② 부고환과 정관, 정낭을 가지고 있다.
- ③ 난소가 생성되어 발달한 후에 배란이 진행된다.
- ④ Y염색체의 성 결정 유전자가 발현하지 않는다.
- ⑤ 뮐러관에서 발달한 여성 내부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다.

문항 성격

문항유형 :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내용영역 : 과학기술

평가 목표

이 문항은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고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가진 까닭에 외관상 여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 적절히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제 풀이 정답: ①

제시문과 <보기>에 제공된 정보를 조합하면, '남성 호르몬 불감성 증후군'을 가진 사람에 대해 추론한 내용인 선택지들이 적절한 한지를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정답 해설

① 이 사람은 Y 염색체를 갖고 있으므로 몸의 내부에 고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항뮐러관형성인자와 테스토스테론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 "주로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볼프관은 부고환·정관·정낭으로 발달한다."로부터 이 사람은 부고환, 정관, 정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로 인해 수용체가 남성 호르몬과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 Y 염색체의 지령으로 인해 이 사람의 단일성선은 고환이 되므로, 난소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이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수 있으므로 고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환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Y 염색체의 성 결정 유전자가 발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 Y 염색체의 성 결정 유전자가 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제시문 다섯 번째 단락 "고환이 형성되고 나면 고환은 먼저 항뮐러관형성인자를 분비하여 뮐러관을 없애라는 신호를 보낸다."로부터 이 사람은 뮐러관이 퇴화한 까닭에 뮐러관에서 유래하는 여성 내부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1. A~C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은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헌법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모든 행정 영역에서 행정의 내용을 법에 미리 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법으로 그 내용을 정하지 않은 행정 영역에 대하여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 이에 관해 견해의 다름이 있다.

A: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의 자율에 맡겨둘 수 없고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지만,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행정부에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B: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질 수 있는 행정의 자유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이 법에 근거할 때 행정기관의 자의가 방지되고 행정작용의 적법성이 확보되므로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

C: 이 원칙을 모든 행정 영역에 무조건 적용하기보다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의 영역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사전에 그 근거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 [보기] —

ㄱ. A에 따르면, 법에 시위 진압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 교통 편의를 위해 시위를 진압할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부는 집회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시위진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ㄴ. B에 따르면, 구호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부는 재난 시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지급할 수 없다.

ㄷ. C에 따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개인과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 이 정책은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행정이어도 그 시행에 있어 사전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항 성격 규범 -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평가 목표

행정의 법률 유보의 원칙에 관하여 설명한 제시문을 이용해서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해 다른 견해의 입장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문제 풀이 정답: ⑤

제시문은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설명하고 이 원칙을 적용할 때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즉, 법률유보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논쟁을 제시하고 있다. A견해는 침해행정에 있어서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정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급부행정 등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B견해는 침해행정이든 급부행정이든 모든 행정영역에 있어서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견해는 행정을 침해행정 또는 급부행정 등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규범영역에서 중요한 행정영역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유보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보기> 해설

ㄱ. 시위를 진압하는 행위는 시위참가자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이고 따라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A, B, C 어떤 견해를 따르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사전에 필요하다. 따라서 침해행정에 있어서는 법률유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A견해에 따를 때 법에 시위진압에 관한 근거가 없으면 행정부는 그 행위를 할 수 없다. A에 의할 때 법에 근거가 없으면 시위진압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 ㄱ은 옳은 평가이다.

ㄴ. 재난 구호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이다. A견해는 재난 시 구호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재난상황에서 국가는 구호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겠지만 침해행정이든 급부행정이든 모든 행정영역에 있어서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B는 이 경우에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구호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ㄴ은 옳은 평가이다.

ㄷ.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행정이다. A에 의하면 법적 근거가 필요 없지만 B에 의하면 그래도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개인과 공공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이라 한다면 C는 개인과 공공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C에 의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ㄷ은 옳은 평가이다.

<보기>의 ㄱ, ㄴ, ㄷ 모두 옳은 평가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법학적성시험 출제/시행기관이 제공하는 2014~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공식 해설서

법학적성시험 최신 5회분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담은 책으로, 실제 시험 출제위원들이 작성한 '출제근거자료(문항해설 포함)'에 기반을 두고 집필되었다.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기획하였다.



출판사 : 에피스테메
판매처 : 전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
가격 : 22,000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수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욱재



저 역시도 201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전국입시설명회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지만 저를 위한 일종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들어가며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재학생 김욱재입니다. 대개 수기라고 하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입학수기 투고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이 글을 읽을 대다수의 분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원칙들을 제시하는 식으로 가볍게 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계기

돌이켜보면 대학 재학 중에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지 그 단서를 찾기 위해 부단히도 고민하였습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맡아 교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전 세계를 누비는 삶을 동경하며 승무원 면접을 세 군데나 보기도 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창업에 뛰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숙고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낯선 영역에 대해 가지게 된 동경에 가까운 호기심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조인의 업무가 주는 책임감이 저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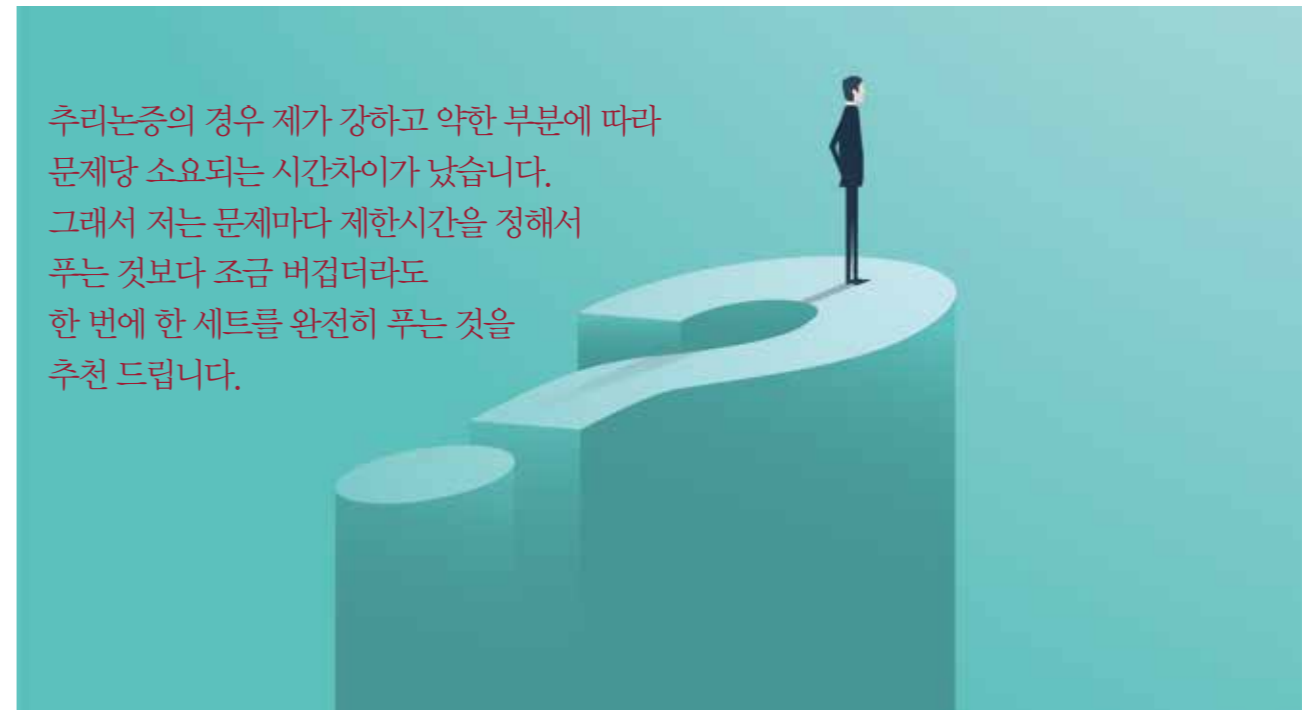
2. 수험생활

(1) LEET

법학적성시험의 경우 저보다도 훨씬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많은 분들이 남긴 좋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팁들만 제시해보겠습니다. 아래는 어디까지나 제 사견일 뿐입니다.

1) 언어이해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지문을 구조적으로 읽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지문의 영역이 문학이든, 과학이나 철학이든 어차피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기 때문에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를 나중에 찾기 쉬운 형태로 표시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부분에 V로 체크를 해둔다거나, 중요한 내용들이 제시되는 부분이나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저만의 기호로 만들어 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영역의 30-32번 문제의 지문에서는 Wnt수용체, GSK3β, β-카테킨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나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저는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위·아래방향 화살표로 그 관계를 표시하는 식으로 이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짧은 시험시간 내에 모든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낼 수 있는 정도의 정보면 불안할 필요없이 그것만으로 수험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기출로는 수능 비문학 고난이도 문제와 PSAT등을 활용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축적된 LEET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풀어보았습니다.



추리논증의 경우 제가 강하고 약한 부분에 따라 문제당 소요되는 시간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마다 제한시간을 정해서 푸는 것보다 조금 버겁더라도 한 번에 한 세트를 완전히 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추리논증

추리논증의 경우 제가 강하고 약한 부분에 따라 문제당 소요되는 시간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마다 제한시간을 정해서 푸는 것보다 조금 버겁더라도 한 번에 한 세트를 완전히 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시간소모가 큰지 알 수 있고 순서대로가 아닌 시간이 적게 걸리고, 정답률이 높은 부분부터 풀어나가며 시간을 관리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리논증의 경우 올해부터 문제수도 늘어나고 기존과 색다른 문제들도 종종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출문제풀이 외의 학습방법으로는 독서가 좋았습니다. 저는 배경지식을 늘리기 위한 독서보다는 논리학에 관련한 책들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특히 S.바커의 '논리학의 기초' 라는 책과 김명석박사님의 '두뇌보완계획 100' 이라는 책이 도움이 됐습니다. 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한두 줄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읽는 경우가 확실히 줄었고, 특히 ㄱㄴㄷ식으로 제시되는 보기가 나오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논술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시간에 큰 에너지를 소모한 이후 치르게 되는 3교시 논술시간에는 집중력을 잃고 '어차피 반영비율도 높지 않다는 것 같으니 글자 수만 채우자'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준다면 입시과정에서 논술 때

문에 불안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채점결과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확실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답안을 작성할 때 두 가지 간단한 원칙을 꼭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첫째는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를 읽고 어떠한 가치나 개념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명심하고, 간단한 논리의 진행도를 만들어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설픈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쓴 글의 결론이 산으로 가서 불안한 마음에 답안을 통째로 다시 쓰게 되는 최악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주장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애매한 절충안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제시문의 주장을 단순 요약하는 식이거나 동어를 반복하는 등의 답안으로는 제대로 점수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애매한 절충보다는 주장의 한계를 분명히 제시 한다는 전제하에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여 일관된 논리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의 주장(혹은 내가 선택한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의

2018 홍콩로펌 인턴십 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강다혜



영국식민지 문화의 하나로 홍콩은 매년 1월 영국식 법률문화인 법률연도 개시의식을 치르고 있다. 2018년은 111회 법정연도로서 1월 8일에 개시행사가 열렸고, 인턴들은 이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었다.

1. 들어가며

필자는 학부 시절부터 막연하게 ‘홍콩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홍콩은 뉴욕과 런던에 이어 세계 3대 금융도시로서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로스쿨에 진학하면 꼭 법무부와 홍콩 사무변호사협회(The Law Society of Hong Kong)에서 주관하는 홍콩 로펌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고, 운 좋게도 1학년 겨울방학 때 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2. 공통일정

가. 오리엔테이션

첫날 일정은 홍콩 로펌 인턴과정에서 선발된 인턴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나라의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사한 홍콩 사무변호사협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것이었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일정은 아래와 같았다.

Session 1	Hong Kong legal and judicial system legal profession of Hong Kong
Session 2	Role and function of the Law Society Becoming a solicitor in Hong Kong
Session 3	Experience sharing – working in the Hong Kong legal industry Cantonese survival Kit

자기소개서의 영역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개성이 강해서 위험 부담이 있는 자기소개서보다는 오래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진중한 자기소개서를 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문장의 조응관계를 유심히 살피고, 표현에 있어 비문이나 유행어가 있지는 않은지 살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보다는 구체적인 과목, 학점을 꼼꼼히 적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형태로 답안에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3) 자기소개서

저의 경우에는 법학에 관련한 정성 요소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직장경험도 없었고, 전문 자격증이 있지도 않았습니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여러 문항 중 대학 진학 후 거둔 학업적인 성취 문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학업계획 문항에 가장 많은 글자수가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항들이 평가위원들께서 특히 유심히 살펴 볼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사기업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묻는 창의성, 리더십 같은 역량보다는 성실함과 재학 중 좋은 성적을 거둔 과목에서의 경험 등을 최대한 진솔하게 적어내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량평가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대로라면 자기소개서의 영역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개성이 강해서 위험 부담이 있는 자기소개서보다는 오래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진중한 자기소개서를 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문장의 조응관계를 유심히 살피고, 표현에 있어 비문이나 유행어가 있지는 않은지 살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보다는 구체적인 과목, 학점을 꼼꼼히 적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저는 답답하고 막막하시더라도 인터넷이나 서적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는 보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형식이나 내용을 표절하여 다른 지원자들과 비슷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오래된 자기소개서의 경우 절대로 나타내면 안 되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정보(진학 동기가 된 부모님의 직업 등)가 들어있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4) 면접

면접 준비는 다른 수험생들도 많이들 활용하는 김종수 저 ‘로스쿨 면접 핵심 250주제’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활용하는 스터디가 많았고,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책인 만큼 이 책의 내용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책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에 나오는 쟁점을 외우기보다는 여러 쟁점을 접하고 예상 문제에 대처하며 저만의 답변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면접은 법전원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망한 법전원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과 같은 주제가 나오는 법전원도 있고, 부산대학교 법전원처럼 고전(古典)이 제시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전원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한 것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학적성시험 응시 이후 곧바로 스터디를 꾸려 면접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사실 무조건 스터디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며

저 역시도 201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전국입시설명회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들에게 미려하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지만 저를 위한 일종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입학만 하면 뭐든지 할 것 같았던 초심을 잃지 않고,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저와 같은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번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

나. 일국양제의 원칙(One Country Two Systems)과 홍콩의 사법체계

1) 영국 관습법의 영향

홍콩의 주권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홍콩의 체제독립성을 50년간 인정받았기 때문에, 2047년까지 중국이 대외적인 주권행사인 외교와 국방문제만 직접 행사하고 그 외의 대내적인 문제는 ‘특별행정지역’으로 지정된 홍콩 자치정부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홍콩의 사법체계는 2047년까지 영국 보통법계를 토대로 한다고 한다(홍콩기본법 제8조).¹

2) 외국인 판사의 참여

홍콩의 기본법(Basic Law)은 위와 같은 일국양제의 전제하에 중국에 반환하기 이전의 법률 체계를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1 _ 홍콩의 원래 법률 즉, 관습법, 형평법, 조례, 부속입법과 관습법은 이 법과 상호 저촉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한다.

2 _ The power of final adjudication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vested in the Court of Final Appeal of the Region, which may as required invite judges from common law jurisdictions to sit on the Court of Final Appeal. (Article 82)홍콩특별행정구의 최종심 권한은 종심법원에 있으며, 종심법원은 여타 관습법 적용국가로부터 판사들을 초청할 수 있다.

3 _ Judges and other members of the judiciary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chosen on the basis of their judicial and professional qualities and may be recruited from other common law jurisdictions. (Article 92) 홍콩특별행정구의 판사와 사법부 구성원들은 법적·전문적 자질에 기초하여 선발하며, 여타 관습법 적용국가에서 채용해올 수 있다.

법률연도 개시행사에서의 연설과 전반적인 행사에서 홍콩 사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시스템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닌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과 법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게 하는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오리엔테이션



것 중 하나가 제82조²와 제92조³에서 외국인 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홍콩 대법원은 재판할 때 영(英)연방의 고위직 판사가 재판에 참여하는데, 그 이유는 영연방 국가 간에 비슷한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리에 따른 판결모순을 방지하고 판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초기에는 홍콩 출신 법조인의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외국 국적의 판사가 기용되었으나, 현재는 법치주의에 대한 상징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한다.

특히 중국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체계를 주장하는 홍콩 내에서는 Common Law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판사들은 정치적 견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편적 법리에 입각하여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

3) 법률연도 개시연식 (Opening of the Legal Year)

영국식민지 문화의 하나로 홍콩은 매년 1월 영국식 법률문화인 법률연도 개시연식을 치르고 있다. 2018년은 111회 법정연도로서 1월 8일에 개시행사가 열렸고, 인턴들은 이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었다.

법률연도 개시행사는 가발과 법복을 입은 법관들의 행진을 시작으로 중심 법원 수석법관 등 4분의 연설이 이어지고, 법관들을 포함하여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Cocktail Reception을 끝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마친다. 법률연도 개시행사에서의 연설과 전반적인 행사에서 홍콩 사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시스템에 대한 자부심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닌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과 법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게 하는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4) 이중언어(영어, 중국어)의 사용

과거 홍콩 대부분의 재판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나, 1997년 이후에는 중국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상급심으로 갈수록 아직까지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어 재판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영어를 사용하는 재판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사건수임 건수가 크게 떨어져 본국으로 떠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홍콩에 진출한 변호사들의 상당수는 중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중국어로 진행되는 재판 진행에 타격을 받는 변호사들은 많지가 않다고 한다.

5) Solicitor와 Barrister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송무와 자문을 모두 할 수 있는 반면, 영미법 체계에 속한 홍콩에서는 solicitor(사무변호사)와 barrister(법정변호사)로 변호사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판법원(Magistrate court)과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는 solicitor도 barrister와 마찬가지로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고등법원(High court)과 중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에서는 barrister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barrister가 solicitor없이 의뢰인과 직접 접

촉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solicitor의 업무지시를 통해서만 의뢰인과 소통할 수 있다.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도시이므로, 홍콩 내의 율사들이 유럽, 미국 등의 고객사가 홍콩을 통해 아시아에 투자를 하거나 중국의 피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고객사가 홍콩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면 율사들이 대율사와 협업하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다. 홍콩법원의 종류와 홍콩의 판사들

1) 2심부터는 법률심

홍콩의 법원은 재판법원(Magistrates' Court), 지방법원(District Court), 고등법원(High Court), 중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로 구성된다. 홍콩의 최종심급 법원인 중심법원에서는 5명의 판사를 두는데, 1명은 사법부 수장(Chief Justice) 혹은 그가 지명한 1인, 3명은 상임판사, 나머지 1명은 외국인 비상임 판사를 배치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2심까지 사실심으로 기능하는 반면, 홍콩에서는 우리나라의 1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법원에서만 사실심이 이루어지고 고등법원과 중심법원에서는 법률심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2) 전관예우의 방지

홍콩의 판사들은 판사로 임용될 때, '판사로 임용된 후에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판사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홍콩의 판사들은 퇴임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봉사활동, पार्ट타임의 재판업무 등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는 등 전관예우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홍콩의 방법도 검토해볼직 하다고 생각하였다.

3) 고등법원(High Court) 방청

인턴들이 함께 고등법원의 실제 재판을 방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재판은 살인사건을 다루는 형사사건이었고, 1명의 영국 법관, 1명의 검사, 1명의 Barister, 1명의 Solicitor가 있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Prosecutor가 우리나라처럼 연속적으로 검사업무만을 하는 임용된 검사가 아니었고, 원래는 Solicitor인데 정부에서 그 사건에 한해서 검사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한다. 영국법관이 홍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이색적으로 보였다.

홍콩이 식민지로 오랜 기간을 보냈으나, 영국의 식민통치가 서양의 선진법률체계를 홍콩에 심어 주었고,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는 현재의 홍콩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거쳤던 대한민국에서는 식민시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서 타국



오리엔테이션자료와 HKLS에서 주최한 Farewell Dinner

의 판사가 재판을 한다면 분명히 사법주권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 일국양제의 위기

1) 사라져가는 영국 식민지 잔재들

최근에는 홍콩 사법체계에서도 영국의 식민지에서의 잔재가 점차 사라지고, 중국 본토의 것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홍콩 법원에서 영국 재판과정에서 쓰는 가발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1997년 홍콩 반환 후에 홍콩 대법원 판사들은 가발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2) 중국의 홍콩 내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6. 10. 정식 취임 선서를 하지 않은 홍콩 입법회의원(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홍콩법원에서 심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즉 홍콩 법원의 사법권력의 독립성을 무시한 것인바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홍콩 변호사들과 법학교수 등

3천여 명은 2016. 11. 8. 중국이 홍콩의 사법체계에 개입하지 말라며, 검은 색 정장을 입은 채 고등법원에서 중심법원 건물 앞까지 구호를 외치지 않은 채 3분간 묵념을 하는 등 침묵 거리행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홍콩까지를 잇는 124km 규모 광선강 고속철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西九龍)역 관리구역에선 '한 지역 두 검사'가 실시되는바, 이는 사실상 홍콩 내에 중국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3) 앞으로의 예상되는 변화

홍콩 사무변호사협회에서도 앞으로 2047년까지 홍콩의 독립적인 사법체계가 유지될 것인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인턴을 온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혹시 연구해서 알게 되면 우리에게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달라'고 농담섞인 말을 하실 정도였다.

그러나 약 30년 뒤에는 사법체계를 포함한 홍콩의 모든 국가권력의 체계는 중국에 예속될 것이 명백한 상황임이 분명하고, 현재도 친중파가 총리에 당선되는 등 중국에 의한 체제예속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홍콩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부각시키면서 중국의 색채를 더하는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 홍콩 속의 우리나라 변호사들

현재 홍콩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로펌들은 김앤장과 태평양 둘 뿐이라고 한다. 다만 한국의 외국법 자문사와 같이 두 로펌은 한국법만 자문할 수 있는 Foreign Firm으로서 홍콩법을 자문할 수는 없다. 또한 한국의 변호사들이 홍콩 변호사로 등록된 인원수가 한 자리수라는 점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 이유는 홍콩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앞으로는 중국어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대학 법학과 출신으로서 PCLL(Postgraduate Certificate in Laws) 과정에 입학하여 2년 내로 Solicitors로서 일을 하여야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Kim & Company, Solicitors에서의 인턴생활

Kim & Company, Solicitors는 2016년에 설립된 홍콩의 첫 한인 로펌이다. 로펌의 설립자이자 현재 대표변호사인 김정용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홍콩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시고 현재 홍콩의 대표적 중심지인 침사추이에 위 로펌을 설립하셨다. 한국인으로서 드물게 홍콩 지역의 방언인 광둥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시고 영미계 로펌에서도



홍콩 국회 방문



다년간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인턴 기간 동안 홍콩의 법조계 생활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다.

가. Chronology 작성하기

첫 과제는 변호사님들이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작성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Chronology를 작성해놓고 보니, 간과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고, 누구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점에서 복잡한 사건일수록 Chronology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홍콩의 IPO (Initial Public Offering)

IPO란 주식공개상장으로 비상장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최초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고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홍콩은 2015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세계 IPO 규모로 1위를 차지할 만큼 해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홍콩 IPO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홍콩 IPO의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한국기업의 IPO 건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Kim & Company의 대표변호사님은 한국

기업의 IPO사건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실제로 인턴기간 동안 Kim & Company에서는 한국 기업의 IPO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고, 필자도 홍콩 IPO에 대한 의뢰인들의 대략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홍콩 IPO의 장점과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는 홍콩 IPO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높이고 실무를 겪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다. 한국 기업의 'Franchise Agreement',

'Shareholders Agreement' 검토

홍콩도 한류열풍의 예외가 아니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도 굉장한 인기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한국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을 볼 수 있었다. 이곳 사무실에서도 프랜차이즈를 여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중 필자가 맡은 과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와의 계약인 'Franchise Agreement'와 점주들 간의 계약인 'Shareholders Agreement'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위 계약에서 점주가 짝수 명일 경우에는 의사결정 시 deadlock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여러 의사결정방안을 제시하는 업무였다.

4. 마치며

2주 간의 인턴은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짧은 기간인 만큼 하루 하루를 알차게 배움으로 채울 수 있었다. 홍콩에서 일하고 싶지만 홍콩에서의 한국 변호사로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여 아쉬웠던 필자에게 이번 기회는 그러한 아쉬움을 채워주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다.

이러한 기회를 준 법무부와 홍콩변호사협회에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던 Kim & Company, Solicitors의 변호사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생생한 헌법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매년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정평이 나있다.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경연대회 현장을 찾았다. editor. 박소희

생생한 헌법 재판의 현장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올해로 4회를 맞은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면 누구나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으며, 경연대회의 문제는 헌법전문가들이 헌법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경연대회는 1차 변론과 최종 변론으로 진행되며, 주변론(쟁점제시포함), 상호질문 및 답변(반론), 종합변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제4회 대회에는 총 53개 팀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서면심사로 이루어진 예심을 거쳐 8개 팀이 본심에 진출했다. 올해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 안〉

파키스탄 국적의 사미나(35세)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하여 여성외국인근로자연대 시흥지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인데, 여성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시흥시에 위치한 근린공원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 집회에서 사미나는 회원들과 함께 시흥시청 방향으로 행진을 하며 동일한 내용의 구호도 수차례 외쳤다. 당시 집회 참여자들 중 이슬람 국가에서 온 여성들은 각자의 종교적 전통에 따라서 부르카, 니캅, 히잡 등을 착용한 상태였다.

시위행렬은 마침내 시흥시청 앞에 도착했고, 이들은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청사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를 분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자들이 주변에 있던 철제 파이프, 각목 등을 휘두르며 경찰에 대항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사미나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비폭력을 외치며 이들의 자제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사미나는 미신고 옥외집회와 시위를 주최하고, 폭력시위에서 복면도구인 부르카를 착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검사와 사미나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사미나는 자신에게 적용되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문 제〉

아래 1.과 2.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변호사인 대리인의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하시오.

1. 사미나를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되, 작성일자는 2017.11.27.로 하시오.
2. 이해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되, 작성일자는 2018.1.10.로 하시오.

본선에 참가한 8개 팀은 대심판정과 소심판정에서 위헌 의견과 합헌 의견으로 나뉘어 대회를 진행했다.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변론 진출팀인 '그럼에도', '지향', '코스모스', '뜨거운 사이다' 총 4팀이 진출했으며 서울대학교 법전문 '그럼에도' 팀이 최종 우승팀의 영예를 얻었다.

〈위헌 측 주장〉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실상의 사전허가제로서,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동법 제16조 제4항 제2호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주의에 위배되고, 동조 동항 제4호의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에 부르카 등의 신원은폐의 목적이 없는 종교복식을 포함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나아가 동법 제22조는 그 벌칙이 과중하여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합헌 측 주장〉

-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는 그 청구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실상의 사전허가제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르카 등의 종교복식에 있어서도 반드시 신원은폐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 조문은 공익을 위한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나아가 동법 제22조는 옥외 집회로 인해 다수의 공익이 과하게 침해당하는 경우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써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조계에서는 흔히 사람이 사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사람을 고른다는 말을 한다. 헌법적 감수성이 충만한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헌법적 쟁점이 감추어져 있는 사건들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나는 사건에 헌법의 생기를 불어넣는 법조인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4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수상팀 명단

상명	수상팀	팀원
헌법재판소장상	그럼에도(서울대학교)	김정현, 황재희, 김소현
금상	뜨거운 사이다(고려대학교)	김은열, 신하영, 박자영
	코스모스(한양대학교)	김효진, 이승목, 이원주
은상	지향(중앙대학교)	현수민, 김성희, 정주성
	성적자기결정권(한양대학교)	윤혜정, 정유선, 박태준
	한민형(고려대학교)	백승우, 양호진, 이동하
	이불 속의 굴(서울대학교)	김미영, 전효빈, 석희재
동상	화음(한양대학교)	최유민, 안세현, 김나경
	뜨거운 사이다(고려대학교)	김은열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지급되었으며, 금상, 은상, 동상, 우수변론상 수상팀(자)에게도 상금과 상장이 주어졌다.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한 서울대 법전원 '그림에도'팀

Q.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황재희) 다른 팀들이 변론을 너무 잘하셔서 대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운 좋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김소연)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불안할 때가 많은데, 천천히 잘 하고 있다는 위로를 받은 기분이라서 기뻐했습니다. 서로 믿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각자의 분담 영역을 넘어 적극적으로 함께 일했던 팀원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정현) 받을 당시에도, 지금도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방학 동안 많은 노력을 투자한 것에 보상을 받은 느낌입니다.

Q. 3명이 모여 출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황재희) 저희 팀원들은 모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서 등하교와 야식을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평소 헌법 이슈와 관련해서 토론을 많이 했었고, 대회 공고를 보니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제가 대회에 같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팀원들 모두 흔쾌히 응해주어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Q. 팀명 '그림에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김소연) 판결문에 자주 사용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에서 따왔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Q. 제4회 경연대회의 문제를 본 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현) 처음에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기본권과 헌법소송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당사자가 어떤 것을 가장 억울해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가장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서울대 법전원 '그림에도'팀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사진 왼쪽부터 황재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정현, 김소연 학생)

있었고, 등장인물들의 행위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Q. 변론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인가요?

(황재희) 논리성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양측 입장이 모두 팽팽한 상황에서 재판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장의 논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대 측에서 예기치 못한 주장을 할 때 이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반박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김소연)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저희 팀의 중심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변론 시간과 질문 시간이 한정적인 만큼, 상대방으로부터의 질문에 답변할 때 저희가 다 말하지 못 했던 근거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정현) 상대방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실제로 재판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들리는 주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요?

(황재희)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청구인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다보니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박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이것 때문에 본선에서 상대방 측이 생각지 못했던 주장을 했을 때 만족스럽게 답변하기 힘들었습니다.

(김소연) 쟁점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 명확히 설시한 결정례나 연구를 발견하지 못할 때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인지,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만 헤매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정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장의 강도를 조절해서 전체 논변의 체계를 잡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회 외적으로는,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웠는데도 학교에 나와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Q. 모의헌법재판대회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황재희) 자료 찾기와 팀내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는 교과서, 헌재결정례, 대법원 판례, 논문 등의 순서로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팀원들끼리 쟁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쟁점별로 역할을 분담한 후, 각자의 주장을 서로 간에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높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효율과 관련된 팀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결론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정성들여서 우리 측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저희(청구인 측)는 여러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왜 현행 집회 사전신고제가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지를 보이는 데 상당한 비중을 뒀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요.

(김정현) 모든 글쓰기가 그렇지만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학우들에게 논변의 타당성을 평가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만 이야기가 계속되면 셋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내용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이 막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Q. 본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황재희) 팀워크를 배웠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던 경우

도 많아서 이를 조율하는 것도 쉽지않은 않았습니니다. 제가 준비를 소홀히 했던 적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는데 팀원들이 도와준 덕분에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었을 텐데, 팀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소연) 헌법소송의 어려움과 재미를 느꼈습니다. 실증적 자료를 모으고 토론회를 여는 등 법정 밖에서의 수많은 노력들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에도 닿게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증적 자료는 얼마 없으면서 내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난감할 때도 있고, 한편으로 이 변론이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의 일부라는 생각에 신이 나기도 하고요.

(김정현) 로스쿨에 들어와서 처음 법 공부를 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우는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청구서를 직접 쓰는 작업을 거치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식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 되는지를 배웠고 앞으로의 공부에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황재희) 로스쿨에서 배우는 헌법은 딱딱하게 여겨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헌법의 법리를 직접 생각하고 써보며 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헌법의 재미를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정을 즐긴다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소연) 방학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불안한 순간들이 분명 찾아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다 못 적었습니다. 한 편의 결정례가 나오기까지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지 일부나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 눈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서면을 점점 완성시켜가는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정현) 대회를 준비하다보니 수업에서 배우는 헌법에서 다루지 않는 빈 공간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³



여름 맞이 건강다이어트

조비룡 교수
서울의대 국민지식센터
가정의학과



마음껏 몸매를 과시할 수 있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맘 때만 되면 병원에서는 잘못된 다이어트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몸매는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좀 더 효율적이고 손쉬운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보자.

1. 행복의 출발,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흔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식사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만 앞세우다가는 단시간은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은 요요현상으로 더 늘어난 몸무게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식사량이 늘어나는 데는 맛있어 보이는 풍성한 음식, 지루한 시간, 불안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의지만으로 조절하려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우울감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잦은 폭식을 유발하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혀 패배자의 느낌을 갖게 한다.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다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습관, 적절한 신체활동, 스트레스 조절과 정신적 안정감이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2. 목표 체중 정하기

자신의 건강에 가장 이롭다는 표준 체중을 알아보자. 다음과 같이 구한다.

표준 체중

남 : 키(m) × 키(m) × 22

여 : 키(m) × 키(m) × 21

이 표준 체중의 10% 내외를 목표로 하면 좋지만, 자신의 현 몸무게가 목표 체중보다 30% 이상 나갈 때는 일단, 현재의 체중에서 10% 줄이는 을 일차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다이어트 시작

삶이 안정된 사람은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실천이 되고, 움이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90%의 사

들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자신의 생활 습관과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꼭 살펴보아야 한다.

1) 문제가 되는 식이 습관 교정하기

일반인들에게 가장 효율적이며, 추천되는 방법은 문제 되는 식이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다. 다른 노력없이 식이습관만 교정해도 한 달에 1Kg은 문제없이 빠진다. 더 큰 장점은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비만한 사람들의 95%가 가지고 있는 고쳐야할 식습관 들이다. 자신에게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지 알아보자.

- 식사가 불규칙하다.
- 외식의 빈도가 잦다. (특히 회식자리와 같이 술을 동반한 과량의 육류 섭취)
- 간식 섭취가 많다. (특히 고열량 고지방 간식; 피자, 피자, 콜라, 초콜렛)
- 식사 속도가 빠르다.
- 늦은 시간(자기 2시간 이내)에 섭취 열량이 많다.

대신에 다음의 좋은 식습관들은 기르도록 한다.

- ①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곡류(잡곡밥, 콩)의 섭취



를 늘인다. 매 끼니마다 두 접시 이상의 나물 반찬을 먹도록 하고, 간식 종류를 토마토, 오이 등과 같은 야채로 바꾼다.

- ② 육류는 생선, 기름이 적은 살코기를 선택한다.
- ③ 세끼 식사와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식당)에서 먹는다.
- ④ 음식은 되도록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지 않는다.
- ⑤ 음식은 천천히 먹는다. 음식은 20번 이상 씹어 먹는다.
- ⑥ 권하는 음식을 사양하는 방법을 익힌다.
- ⑦ 새로운 취미활동을 찾는다; 먹는 일 대신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
- ⑧ 회식, 뷔페를 갈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어느 정도 먹을지 미리 생각하고 간다.

2) 시중의 다이어트법 이해하기

시중에는 약물을 포함한 여러 다이어트 법들이 선전되면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다이어트법들을 이용하여 보면 대부분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몇 개월 지나서이다. 이러한 다이어트 법들은 대부분 비용이나 영양상의 문제로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이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몸무게도 다시 늘어난다. 단시간 내에 몸무게를 관리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생활 습관의 교정이 없는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다시 살이 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신체활동 지속하기

일반적으로 먹는 것에 비해 운동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우므로, 몸무게를 빼는 데는 다이어트가 중요하지만, 빠진 몸무게를 유지하거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운동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늘이는 것이 운동과 효과의 크기는 비슷한 반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평소 몸을 많이 움직이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추천된다.

1) 신체활동 늘이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 구역씩 일찍 내려서 걷는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차를 갖고 다니더라도 가장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업무 중간의 휴식시간에 10분 이상 걸을 수 있는 자신만의 코스를 마련하여 두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습관 조절만으로도 더 이상 살찌지 않도록 하는 효과는 100%다.

2) 운동 시작하기

일단 신체활동이 습관화된 상태에서 좀 더 건강에 투자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숨찬' 운동을 시작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비만 조절에는 더 좋다고 되어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40세가 넘었고, 이때까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 운동 시에 가슴 통증이 있는 사람은 꼭 병원을 먼저 찾아 운동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 외 건강한 사람들은 첫 시작하는 운동 강도로는 일반적으로 숨이 차지만, 약간의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추천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강도를 찾으려면 운동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1분간의 심장박동수를 세어 보면 된다. 자신에게 맞는 목표 심박수는 추정 최대 심박수(220-연령)의 60-85% 정도로 유지하도록 한다. 초보자는 40-60%로 시작하여 점차 적응이 되도록 운동 강도를 높여야 한다. 물론, 운동을 할 경우는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

5. 즐겁게 시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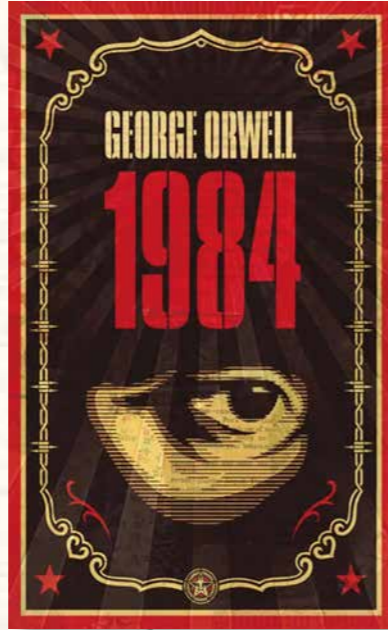
다시 말하지만, 몸매를 날씬하게 유지하는데 대한 기대가 크고, 그러기 위한 방법들 또한 흥미 있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몸무게에 내 삶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몸무게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 전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A양의 경우, 현재 나름대로 날씬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몸무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2번이나 이혼해야 했고, 회사를 4번이나 바꾸었다한다. 이런 경우도 성공적인 몸무게 조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여름에 많이 나는 신선한 야채를 즐기고, 새벽 등산이나 수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면, 이번 여름을 날씬하게 보낼 수 있는 반은 이미 진행이 된 셈이다. **창**

저자 소개

- 서울의대 졸업
- 전공 : 건강증진, 건강노화
- 현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국민건강지식센터장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1984

다음은 1903년에 태어난 한 남성이 1948년에 그린 1984년의 미래사회의 이야기다.



때는 1984년 4월 4일, 그곳은 영국 런던이었다.

제1부:

화창하지만 쌀쌀한 4월의 어느 날 서른아홉의 덩수룩한 미남 윈스턴은 7층 자신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 층계위를 올라가고 있었다. 층계참에 붙여진 거대한 포스터 속 얼굴이 그를 응시하고 있다.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텔레스크린은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기기는 송수신이 동시에 가능한데 선철과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었다. 런던 소재 피라미드 모습으로 300미터 치솟은 진리부에는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굴종, 무식은 힘’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3천 개의 방이 있는 진리부는 보도, 연예, 교육 및 미술을 관장한다. 그 주변에는 전쟁을 관할하는 평화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애정부,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풍부부가 있다. 애정부에는 단 하나의 창도 없고, 길목마다 초병이 지키고 있다.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중사고’라는 신어가 번쩍 떠올랐다.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빅브라더를 연호했다. ‘빅브라더, 빅브라더, 빅브라더!’ 군중 사이에서 나타난 오브라이언이 그를 위로한다. “난 당신편이네, 나는 당신이 경멸하고 미워하는 걸 다 아네. 그러나 난 당신편일세.” 윈스턴은 펜을 들고 대문자로 쾌락을 쫓듯 써 내려갔다. “빅 브라더 타도! 빅브라더 타도!”

저자소개



박상흠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입은 쟁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장차 나의 꿈은 법률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그곳의 아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총놀이를 즐겨했다. 그리고 아홉 살의 남자는 부모를 사상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동전, 우표, 책표지, 깃발, 포스터, 담뱃값 모두에 빅 브라더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다. 그곳은 바로 빅브라더의 세계였다. 아침 7시 15분 텔레스크린에서 체조가 방송된다. 기기 앞 사람들은 구령에 맞춰 일제히 체조를 한다. 1984년, 세계는 오세아니아와 유라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3개 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당의 슬로건은 말한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그것을 그네들은 현실통제, 이중사고라 불렀다. 이중사고란 논리를 전개해서 논리를 반대하는 것, 예컨대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믿으면서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믿는 것을 뜻한다.

풍부부는 타임스 3월 17일자를 통해 유라시아 군대가 곧 아프리카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윈스턴은 지난 12월 19일자 기사에 1983년 4분기 각종 소비품의 생산량을 예보한 것과 오늘 신문에서 발표한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 것을 발견하고 첫 숫자와 끝 숫자를 일치하도록 수정했다. 과거에 당이 내놓은 예언은 모두 수정되었고, 모든 역사란 필요하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다시 고쳐 쓸 수 있었다.

윈스턴은 조사국에 근무하는 친구 사임을 만났다. 사임은 언어학자로서 신어 전문가였다. 그가 하는 일은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말을 없애는 일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동사와 형용사를 먼저 없애는데 명사도 동의어와 반의어를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가령 ‘좋은(good)’의 반대말인 ‘나쁜(bad)’은 ‘안 좋은(ungood)’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썩 좋은(excellent)’보다는 ‘더 좋은(plusgood)’이 낫다는 것이다. 의미가 모호하고 불필요한 차이를 가진 구어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언어가 완성될 때 비로소 혁명은 완수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그는 신어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다.

풍부부는 보도했다. “빅 브라더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롭고 행복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일주일에 초콜릿 배급이 20그램 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윈스턴은 20그램의 배급을 줄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황당무계한 통계가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왔다. 작년과 비교해 식량도 늘고 의복도 늘고 주택도 늘고 서적, 아기도 늘었는데 질병과 범죄는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적대시되는 것은 사랑보다 성욕이었다. 모든 결혼은 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두 남녀가 육체적 매력에 끌려 원하는 인상을 보이면 영락없이 거부됐다. 결혼의 유일한 목적

사임은 언어학자로서 신어 전문가였다. 그가 하는 일은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말을 없애는 일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동사와 형용사를 먼저 없애는데 명사도 동의어와 반의어를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가령 ‘좋은(good)’의 반대말인 ‘나쁜(bad)’은 ‘안 좋은(ungood)’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썩 좋은(excellent)’보다는 ‘더 좋은(plusgood)’이 낫다는 것이다.

은 당에 봉사할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윈스턴은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자유란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다. 그 자유가 허락된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여기에 따른다.”

제2부:

언제부턴가 길 위를 배회하는 그를 미행하는 검은 머리의 여자가 눈에 띈다. 그녀는 그를 염탐하는 듯했다. 그녀는 누굴까. 그녀가 윈스턴을 보이지 않게 따라온 건 오래된 일이다. 그녀는 길가에 쓰러진 그에게 쪽지를 전해줬다. 쪽지에는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이를 본 윈스턴에게 생의 의욕이 솟구쳤다. 그 둘은 도시 곳곳에 즐비한 텔레스크린의 감시망을 피해 만났다. 승리광장 기념비 근처 군중들 사이에서 둘은 나란히 서있었다. 둘은 서로 마주 보지 않은 채 데이트를 했다. 일요일 오후 패딩턴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들판을 건너 오솔길을 따라 문설주 없는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다. 열성당원, 사상경

찰의 얼굴을 가졌던 그녀는 오랜 동안 윈스턴의 뒤를 추적해왔고 그는 그녀를 알았다. 그녀가 그를 좋아했던 것은 윈스턴이 열성당원이 아닌 자유주의자였다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였다. 둘은 개울 앞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지빠귀 새소리가 들린다. 키스 속에 둘은 녹아들 어갔다. 순결을 당의 정강으로 삼는 정책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다. 둘은 사카린이 아닌 설탕을, 그리고 진짜 빵과 우유를 먹고 마셨다. 윈스턴과 줄리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갔다. 그녀는 윈스턴이 당의 강령 영사의 원리, 이 중사고, 과거의 변조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부인, 신어의 사용법에 대해 말하면 따분해했다.

오브라이언을 만난 윈스턴은 고백했다. “당에 대항하는 어떤 비밀조직이 있다는 것, 더구나 당신이 그곳에 가담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가담하고 싶습니다.” 오브라이언은 텔레스크린을 잠시 껐다. 그리고 묻는다.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가. 조국을 배반할 수 있는가. 수백 명의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태업도 할 수 있겠는가. 윈스턴은 모두 ‘네’라고 답한다. 오브라이언은 한 권의 책을 건넨다. 골드스타인이 지은 ‘과두정치적 집단주의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었다. 놀랍게도 “무식은 힘이다. 전쟁은 평화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은 잉여자분을 소비하기 위한 방편이며, 3강 체계의 세계에서 권력자들은 전쟁의 위협을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진리부가 만든 날조와 애정부의 억압은 정권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을 읽고 있는 두 사람에게 갑자기 금속성의 음성이 울렸다.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둘은 작별인사를 고했고 큰 덩치의 사나이들은 줄리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리고 윈스턴은 애정부의 감옥에 투옥된다.

제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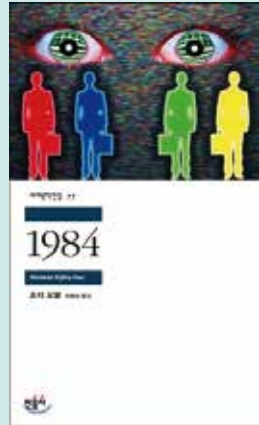
텔레스크린의 스피커가 울렸다. “6079 스미스 W 감방에선 주머니에 손넣지 마.” 시간이 지나 그는 야전침대에 누워있으며, 그의 옆에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피하주사기를 들고 있다. 주사를 맞은 그는 혼수상태에 빠지곤 했다. 그리고 고통스런 심문의 연속이다. 그곳에서 갑자기 친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오브라이언이었다. “걱정말게. 윈스턴 내가 자넬 보호해줄 테니. 자넬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네. 지금 오세아니아와 어느 나라가 전쟁 중인가” “제가 체포될 때는 오세아니아가 동아시아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좋아. 사실을 말해봐, 윈스턴. 자네가 기억 하던대로.” “체포되기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는 동아시아와 절대 전쟁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동맹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당은 모든 당원들의 기억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한다고 가르쳐준다. 조금 후 그는 엄지손가락을 감춘 후 네 개의 손가락을 보이며 몇 개인지 묻는다.

“넷”
 “만약 당이 다섯 개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넷입니다.”
 다이얼의 바늘이 55를 가리킨다.
 “윈스턴 손가락이 몇 개지?”
 “넷”
 바늘이 60으로 올라갔다.
 “손가락이 몇 개야, 윈스턴”
 “넷!넷! 다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네 개였다.
 “손가락이 몇 개야, 윈스턴”
 “네 개. 그만, 그만해요! 어찌자는 겁니까.

넷, 넷!”
 “손가락이 몇 개난 말이야 윈스턴”
 “다섯”
 “안돼, 윈스턴. 자넬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넬 여전히 네 개라 생각하고 있어.”
 “손가락이 몇 개야”
 “네개, 다섯 개.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오브라이언은 당원들의 외양만이 아닌 마음과 영혼을 가져오는 것이 당의 목적임을 재차 설명한다. 빅브라더는 죽지 않고, 당은 권력 그 자체임을 가르친다. 그리고 간첩행위, 배신, 체포, 처형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줬다. 또 인간성은 곧 당임을 선포했다. 차츰 차츰 오브라이언의 말에 빠져 들어가는 윈스턴은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다. “자유는 굴종, 둘 더하기 둘은 다섯” 오랜 투옥생활에서 석방된 그는 줄리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빅 브라더를 사랑한다.

총 3부로 구성된 <1984>. 1948년에 살았던 조지오웰이 바라본 '1984년의 초상화'는 전체주의가 미래세계를 지배하는 반유토피아 세계였다. 1948년에 모습을 드러낸 전체주의를 미래의 세계로 이전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체주의 세계에서 공동감옥에 생활하던 모습을 그린 1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자유의 출구를 찾은 2부, 애정부 감옥에 투옥된 윈스턴과 평소 그의 마음을 이해하던 오브라이언과의 대화 그리고 세뇌당한 그의 정신세계를 서술한 3부. 숨 막히는 이야기 전개 속에 독자들은 오브라이언의 두 얼굴을 보게 된다. 또 두 얼굴에 갇힌 윈스턴이 빅브라더를 향한 마음이 증오에서 애증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목격하게 된다. 저자가 살던 현재의 역사를 미래로 밀어낸 것과 달리 2018년 현실점에 서있는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 독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창**



1984

<동물농장>과 함께 조지 오웰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고 있다. 이곳의 정치 통제 기구인 당은 허구적 인물인 빅 브라더를 내세워 독재권력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정치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텔레스크린, 사상경찰, 마이크로폰, 헬리콥터 등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한다. 그리고 당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당원들을 사상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과거를 끊임없이 날조한다. 존재하지 않는 반역자 골드스타인을 내세워 사람들의 증오심을 집중시키는 가 하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성욕까지 통제하려 든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이 같은 당의 통제에 반발을 느끼고 저항을 시작한다. 그는 지하 단체인 '형제단'에 가입해 당의 전복을 기도하지만 함정에 빠져 사상경찰에 체포되고 만다. 윈스턴은 모진 고문과 세뇌를 받은 끝에 연인마저 배반하고 당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가치를 상실한 채 빅 브라더를 사랑하게 되고, 조용히 총살형을 기다린다.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업들도 속속 워라밸 경영을 도입하고 있을 정도. 하루 종일 법전과 씨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공부와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멋진 날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따뜻한 사랑이 있는 무대 연극 사랑해요, 당신

2017년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 117%라는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연극 <사랑해요, 당신>이 봄을 맞아 돌아왔다. <사랑해요, 당신>은 서로 사랑하지만 항상 곁에 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던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공연으로,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과 오늘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해주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남편 '한상우' 역에는 이순재, 장용 배우가, 아내 '주윤애' 역에는 정영숙, 오미연 배우가 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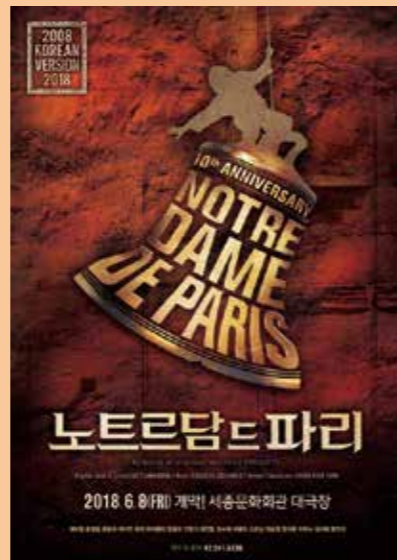
공연장소 KT&G상상마당 대치아트홀 티켓가격 일반석 6만 원
공연기간 2018.04.28.(토) ~ 2018.06.03.(일) 홈페이지 <http://www.sangsangmadang.com/>

Play-acting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 온 명작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매혹적인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그녀를 사랑하는 세 남자를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프랑스의 대표 뮤지컬이다. 이 작품은 1998년 프랑스 초연 이후 19년간 전 세계 25개국에서 3,000회 이상 공연되었으며, 특히 2016년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은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이라는 흥행 대기록을 세운 바 있다. 기존의 타 뮤지컬과 달리 <노트르담 드 파리>는 곡 위에 대사가 얹혀진 대표적인 성 스루 뮤지컬로, 한편의 시와 같은 아름다운 가사와 수려한 멜로디의 51개 곡, 탄탄한 스토리와 스펙터클한 무대, 역동적인 안무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명작이다.

공연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가격 VIP석_14만 원, R석_12만 원
공연기간 2018.06.08.(금) ~ 2018.08.05.(일) 홈페이지 <http://www.sejongpac.or.kr/>



Musical

Exhibition

미술관과 만난 캐릭터

Musee de KAKAO FRIENDS

카카오프렌즈가 두 번째 전시 프로젝트 <뮤제 드 카카오프렌즈>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림미술관이 전시 기획에 참여했다. 전시 프로젝트 테마는 '뮤제 드 카카오프렌즈 (Musee de KAKAO FRIENDS)'로, 유명 박물관을 연상시키는 공간과 고전 작품들을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통해 패러디해 누구나 쉽게 다가가고 즐길 수 있는 위트 있는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점이 특징이다. 일곱 색션으로 구성된 전시에서는 사진, 그래픽, 조각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5명의 국내 아티스트의 손을 거쳐 패러디 예술 작품으로 탄생된 라이언, 무지, 어피치, 프로도, 네오, 튜브, 제이지, 콘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장소 카카오프렌즈컨셉뮤지엄 서울
전시기간 2017.12.15.(금) ~ 2018.05.27.(일)
티켓가격 3천 원
홈페이지 <http://www.kfmuseum.com/>



발레에 담은 고전연가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춘향

유니버설발레단은 오는 6월 9~10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발레 춘향>을 공연한다. 1986년 탄생한 <심청>에 이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작이자 두 번째 창작 발레다. 고전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에서 스토리를 가져와 2007년 세계 초연했으며, 이후 끊임없는 정련을 통해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는 작품으로 거듭났다. 2014년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안무, 무대, 의상까지 전면 수정작업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출 및 안무를 맡은 유병현 감독은 익숙한 플롯에 드라마 요소를 강조하고 더 정연하게 구현했다. 의상을 담당한 패션 디자이너 이정우는 한복 특유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모던한 세련미를 더한 의상을 선보여 전통미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냈다.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공연기간 2018.06.09.(토) ~ 2018.06.10.(일)
티켓가격 R석_8만 원, S석_6만 원
홈페이지 www.saticket.co.kr

Performance

LAWSCHOOL NEWS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교육부장관 등과 면담 진행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지난 4월 12일(목)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형규 이사장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위원회장과도 접견도 진행했다.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사회를 위해,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열려

지난 4월 2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는 법의 날 기념행사가 이루어졌다. 법의 날은 올해 55회를 맞이하였으며,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고자 지정되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실현을 위해 법질서 확립 의지를 함께 다짐하는 날이기도 한 법의 날은, 1963년 세계법률가대회에서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한 이래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동 주관하고 있다. 이 날 기념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하여 법의 날 수상자 및 가족, 그리고 각 부처 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BOOK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반려견 법률 상식〉



약 오천만의 인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반려견을 포함한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의 인구 다섯 사람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기르는 반려동물 중에서는 반려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다보니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는 사람이 반려견에 물려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아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종종 있다. 책의 저자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을 키우는 데 필요한 법령이나 판결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향후 고려하여야 할 정책이나 입법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 보고자 책을 집필했다.

저 자 : 홍완식
가 격 : 15,000원
출판사 : 마인드맵
발행일 : 2018.04.20.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의 시각으로 풀어낸 기출 공법기록형 2018

〈기출 공법기록형 2018〉에는 헌법재판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의견서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행정소송·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책을 집필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현재까지 출제된 기록형 문제를 보면,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를 각각 1개씩 출제하여 배정한 점수 역시 50점으로 균등하다'고 밝히며 향후 출제경향까지도 예측하고 있다. 〈기출 공법기록형 2018〉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의 시각에서 풀어낸 답안들이 수험생들의 고득점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 자 : 정형근
가 격 : 28,000원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발행일 : 2018.04.20.



2018년도 한국은행 주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공모전



- **공모 대상** :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 **공모 주제** :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과제 등
 - *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 **작성기준 및 응모방법** :
 - 작성기준: A4용지 20매 이상
 - 응모기한 및 제출방법: 2018.7.23.(월)까지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우편 제출
- **결과발표 및 시상** : 제출된 논문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 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2018.11월경 다음과 같이 시상

등 급	편 수	시상내용
최우수상	1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부상 (상금 500만 원)
우수상	1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부상 (상금 300만 원)
장려상	2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부상 (상금 각 150만 원)

- **문 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02-759-4129, 4087)으로 문의



서울국제법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 **기간 및 장소** : 2018.7.2.(월)~13(금) 10일간, 국립외교원
- **프로그램 구성** :
 - 동아시아 국제법 현안, 국제법 기초, 조약법, 분쟁해결, 국가책임, 국제환경, 국제투자, 국제형사 등 국제법 이슈 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 및 토론
 -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
 - * 상세 프로그램은 2018년 5월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선발 인원** : 총 00명
- **참가 자격** : 2018.5월 기준 국제법 전공자(석사과정 이상)
-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가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이메일(cil@mofa.go.kr)로 2018.5.25(금)까지 개별 신청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발자 공고** : 2018.6.8.(금),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문 의** :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02-3497-7618)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략형

1.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된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④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른다면, 국민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자신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
- 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2. 공소기간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취소를 이유로 한 재판이 확정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 ②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 ③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④ 검사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하여 '2010.11.경'으로, 투약 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경우
- 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甲은 2017.5 경 사망하였으며, 가족으로는 세 자녀 A, B, C가 있었다. 甲은 생전에 B에게는 2억 원을, C에게는 2천만 원을 증여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B에게는 2천만 원, C에게는 2억 원을 유증하였다. 그러나 A는 甲의 사망으로 아무런 상속의 이익을 받지 못하였다. A, B, C의 유류분액이 각각 6천만 원인 경우, A는 누구에게 얼마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각 증여나 유증은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가정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B에게 3천만 원, C에게 3천만 원
- ② B에게 0원, C에게 6천만 원
- ③ B에게 6천만 원, C에게 0원
- ④ B에게 2천만 원, C에게 4천만 원
- ⑤ B에게 4천만 원, C에게 2천만 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상군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송남대학교



송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